

제40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9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7)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8)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6)
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7)
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
1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9)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1)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2)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5)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9)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7)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2)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2)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5)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2)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2)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8)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2)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4)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9)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8)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2)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9)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4)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7)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4)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7)

3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6)
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1)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7)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9)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0)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0)
4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2)
4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2)
4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1)
4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4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4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1)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
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
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
5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5)
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8)
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4)
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6)
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5)
5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9)
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2)
5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0)
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
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3)
6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8)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6)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7)
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5)
6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4)
6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6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49)
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
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0)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0)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3)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6)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4)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0)
7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6)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5)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6)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4)
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0)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8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3)
8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
88.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4)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6)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7)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3)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0)
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7)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2)
9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1)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8)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1)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3)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7)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4)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9)
103. 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0)
10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10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5)
1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2)
1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0)
1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0)
1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4)
1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1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2)
1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6)
1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5)
11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5)

1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8)
1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3)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4)
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8)
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2)
1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12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6)
1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1)
1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1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8)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3)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1)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6)
1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2)
1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6)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3)
1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0)
1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
1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5)
1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1)
1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1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5)
1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5)
1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0)
1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3)
14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14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6)
14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1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운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1)
14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2)
14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147.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4.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 9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7) 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3) 9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8) 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9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6) 9
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9
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9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7) 9
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 9
1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9) 9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1) 9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2) 9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5) 10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9) 10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7) 10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2) 10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2) 10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5) 10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 10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2) 10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2) 10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8) 10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2) 10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4) 10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9) 10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8) 10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2) 10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9) 10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4) 10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7) 10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4)	10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7)	10
3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6)	10
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1)	10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7)	10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9)	10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10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10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0)	10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0)	10
4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2)	10
4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2)	10
4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1)	10
4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10
4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10
4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1)	10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	10
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	10
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	10
5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10
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5)	10
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8)	10
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4)	10
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6)	10
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5)	11
5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9)	11
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2)	11
5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890)	11
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9111)	11
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3)	11
6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8)	11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6)	11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	11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7)	11
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5)	11
6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194)	11
6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11
6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11
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49)	11

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	11
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0)	11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0)	11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3)	11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6)	11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4)	11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0)	11
7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11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6)	11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5)	11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6)	11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4)	11
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11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0)	11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11
8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3)	11
8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	11
88.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4)	11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6)	11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7)	11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3)	11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0)	11
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11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7)	11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2)	11
9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1)	11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8)	11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1)	12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3)	12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7)	12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4)	12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9)	12
103. 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0)	12
10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12
10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5)	12
1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2)	12
1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0)	12
1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0)	12
1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4)	12
1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12
1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2)	12
1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12
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6)	12
1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5)	12

11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5)	12
1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8)	12
1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3)	12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4)	12
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8)	12
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2)	12
1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12
12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6) ..	12
1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1) ..	12
1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12
1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8)	12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3)	12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1)	12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6)	12
1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2)	12
1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6)	12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3)	12
1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0)	12
1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	12
1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5)	12
1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1)	12
1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12
1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5)	13
1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5)	13
1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0)	13
1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3) ..	13
14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13
14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6)	13
14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13
1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1)	13
14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2)	13
14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13
147. 업무보고	14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3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1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1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1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15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1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154.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73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9
15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	79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들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추가 안전 협의를 양당 간사님께 요청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한 국회 방역 대책이 일부 조정되어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윤 전문위원입니다.

현승철 행정실장입니다.

조서연 · 손중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7)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8)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6)
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7)
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
1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9)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1)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2)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5)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9)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7)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2)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2)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5)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2)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2)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8)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2)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4)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9)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8)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2)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9)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4)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7)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4)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7)
 3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6)
 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1)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7)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9)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0)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0)
 4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2)
 4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2)
 4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1)
 4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4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4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1)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
 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
 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8)
 5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5)
 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8)
 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4)
 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6)

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345)
5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9)
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2)
5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90)
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11)
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3)
6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8)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6)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7)
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5)
6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194)
6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6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49)
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672)
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90)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130)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03)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06)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74)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60)
7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11)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6)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5)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6)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4)
8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0)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8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3)
8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
88.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4)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6)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7)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3)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0)
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7)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2)
9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691)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058)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701)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943)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017)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114)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479)

103. 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530)

10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10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5)

1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2)

1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20)

1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750)

1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9134)

1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1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2)

1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6)

1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5)

11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035)

11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48)

117.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303)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4)

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8)

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2)

1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12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6)

1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651)

1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1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8)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3)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1)

128.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6)

129.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2)

130.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6)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833)

1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890)

1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03)

1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35)

1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81)

1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611)

1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05)

1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35)

1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390)

1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3)

14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545)

14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6)

14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1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141)

14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02)

14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10시16분)

○위원장 정춘숙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6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1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위원 간 사전 협의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상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면서 범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환자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명칭 변경을 통해 치매 용어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법이 제정된 이후 치매라는 용어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익숙한 상황에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치매 인식 개선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그리고 의료비 지원 사업 범위에 돌봄비용을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돌봄 범위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동의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장이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의권자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가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한과 비밀 엄수 그리고 제재 등의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흡연율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각 법률안의 검토보고에 관해서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간 사전 협의에 따라 예정된 업무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47.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10시20분)

○위원장 정춘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로 확대하고 미래에 대비한 개혁과제 추진을 중점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서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과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인구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입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김현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현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 약자복지 확대입니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고 발굴하는 한편 신속히 소재도 파악할 수 있도록 체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과 장애인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춤 대응하고 고독사 예방과 상병수당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품질 좋은 서비스를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산업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5쪽,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뒤쪽 주요 현안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애 초기부터 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해도 응급의료가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고 트라우마가 없도록 심리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7쪽, 복지개혁 추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상, 재정, 보험료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질 향상과 비용 관리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뒤쪽 주요 현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출 혁신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누락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9쪽,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까지 대비하는 인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육아 병행을 위해 부모급여 등 소득 보장은 물론 가정양육, 돌봄, 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계가 전환되도록 의료부터 장기요양, 주거까지 각 분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팬데믹이나 희귀질환 등에 대비해 바이오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글로벌 연계, 규제혁신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R&D 민관투자 확대, 펀드 등을 통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현안입니다.

13쪽, 국민연금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정성, 보장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경로로 국민 의견 수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토대로 국회 연금특위의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

이며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하고 이에 적정한 보상을 하며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중증·희귀질환, 응급정신질환 등을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계 협의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상황입니다.

범정부 대책 수립을 위해 장애계, 관계부처 참여 그리고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의 복지, 건강, 보육과 교육, 경제, 문화, 이동권 등 여러 분야에서 약자복지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7쪽 이후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현주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전반을 설명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국민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규제 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신하여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식약처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김유미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추진 현황, 주요 현안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식의약 안전혁신입니다.

비대면과 편의성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외식·수입식품 안전망을 재설계하고 소비자·업계와 함께 안전이슈를 해결하는 협력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4쪽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실시간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혁신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IT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도 공급 차단에서 더 나아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예방과 사회재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안전 구현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확충하고 점자 또는 음성 표시 가이드 제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표시 정책으로 안전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자 치료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기

반을 확충하고 긴급 사용승인 제품 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과 임상시험 참여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환자 권리보호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식품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성·품질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확산을 통하여 동물복지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의약 산업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입니다.

디지털헬스, 첨단바이오, 푸드테크 등 새로운 유망기술은 특성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R&D 코디, 맞춤상담, 신속심사프로그램 등 규제 지원의 다리를 단단하게 도와 제품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께 약속드린 규제혁신 100대 과제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올해도 현장의 소리를 과감히 반영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2.0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제품이 글로벌 규제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아·태 규제 기관장 협의체 신설 등 글로벌 협력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수출 규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혁신입니다.

식품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행정자원은 한정되어 디지털,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서류심사를 정부 최초로 365일 24시간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수출국의 위생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교환하여서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위해식품 선별 적중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식품 데이터를 융합·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미지, 음성인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안심소비 환경이, 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이, 정부에게는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3년이 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이겨 내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동참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방역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과 만성질환, 미래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여 팬데믹,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질병 위협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양동교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입니다.

3쪽,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안정화 추세이나 WHO는 지난 1월 30일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위험도 평가와 해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 수준을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에는 신속한 진단과 백신접종, 먹는 치료제를 대응수단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여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등 일상적 관리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변이 출현 여부 모니터링과 함께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유행상황 호전으로 단기비자 발급 제한조치의 조기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입니다.

현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의 접종 전략과 유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방역 상황에 맞는 접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근거 기반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백신접종 효과와 접종 이상사례에 대한 연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코로나19 중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질병 예방·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Disease X에 대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대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등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질환의 조기 탐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기 시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진단 검사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인 접촉자 관리와 유행 상황 예측을 위해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백신접종 인프라도 정비하겠습니다.

방역시스템 연계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코로나 빅데이터 개방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둘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추가하고 제3차 결핵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원헬스 기반의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감염관리가 취약한 의료기관의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15쪽 셋째, 만성질환 및 건강위협 대비 국민건강 보호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감시·조사와 근거 평가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범위와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건강위해 예방·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사·감시와 연구를 내실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내외 선제 R&D 투자와 국제기구와 선진국, 중저소득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보건 의제를 주도하겠습니다.

19쪽, 국내 바이오헬스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서 신축사업이 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상 150, 그다음에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그래서 1050병상을 요구했었지요, 처음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고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은 기재부 또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부가 병상 공급현황하고 병상이용률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정한 결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 후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적극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모든 게 때가 있고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시켜야 할 때 변경시키지 않으면 추후에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의미 없는 것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왜 1050병상을 우리가 요구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료안전망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우리가 필수의료라고 하는, 응급이라든가 또는 소아·분만·심뇌혈관질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을 보면 공공병원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임에도 불구하고 80%의 환자를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필요성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종합병원·상중

병원처럼 오히려 이것은 지방 공공의료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센터 기능을 해 가지고 재난, 여러 가지 감염·의료 이런 것에 대한 정책 기능도 수행을 하고 이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또 의료 부담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수익성까지 고려한 1050병상을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별 근거 없이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30년까지 병상 초과수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27년에 완공한다는 일정을 고려할 때 일단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기본설계 후에는 반드시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쯤 되면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에 성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영인 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하고……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기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이것들을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의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의지도 박약하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약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중앙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본 것 보면 1조 1000억대고 지금 삼성에서, 이건희 유가족 측에서 7000억을 여기다가 기부했기 때문에 1조 8000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된 예산을 보면, 축소된 것들을 반영해서 보면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는데 기재부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면피성 발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적인 필요성을 요구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1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드리세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많은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본 병상만 하더라도 800병상을 요구했어요. 원래 600병상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540석 정도로 축소를 한 상태예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것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병원으로서 중앙의료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으로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계획에 정확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잠깐 답변을 드리면 국립중앙의료원 병동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병원은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7000억 중에서 2000억은 R&D 등 장비 확충을 하도록 돼 있고 쓰인 건 5000억인데 그것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 100병상의 외상센터가 독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외에도 충분한 의료인력,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하여간 오늘 약속하신 부분들을 이후에 정확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정확한 긴밀한 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지영미 질병청장님, 좀 안 보이는데……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김미애 위원** 거기 계시네요.

취임 후 첫 전체회의입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즉 자율화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감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1월 마지막 주 일평균 확진자가 2만 1000여 명에서 2월 초에 1만 4600여 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자율화됐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마스크 첫 의무 도입 이후에 27개월 동안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조치를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1단계 의무 조정·해제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지금 7차 유행이 안정화 추세이고 실제로는 해외의 상황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데믹으로 가는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규 변이 같은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를 일상적 관리로 하려면 대비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김미애 위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특별히 영유아나 학생들이 친구와 선생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얼굴 보고 교감하니까 학교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고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감염 우려 등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착용은 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진짜로 긴

터널의 끝이 이제서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보면 이 지표대로 3개 달성해서 해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김미애 위원**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런 자율방역 기조를 책임 회피, 각자도생이라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자율방역 기조에 변함은 없는지, 향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저희가 7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하려면 사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포함해서 일상방역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3년간 저희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미애 위원** 국민 고통을 강제하면서 방역하는 것은 이제는 좀 경향이 축적되었고 데이터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대로 과학방역·자율방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께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룸카페에 대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여기가 숙박업소로 보입니까?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가 문제없다고 보여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숙박업소라고 해도……

○**김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룸카페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10여 년째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영비법 개정으로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자 대안으로 룸카페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여기는 숙박업소에 해당…… 사실상은 숙박업소처럼 보이는데 자유업, 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적절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이 듭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룸카페……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룸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이름의 카페로 만화카페도 제대로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런 곳도 밀폐 공간, 소파, 간이침대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예 내놓고 낮잠 자기 좋은 카페로 홍보하면서 숙박업인지, 정말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일반업소인지 사실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제대로 근절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말씀……

○**김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거 정말 손놓으면 안 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것은 협업도 해 주시고 이 계획을 반드시 제대로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업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룸카페 등을 비롯해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기승전 목포의대, 목포 출신 국

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지영미 질병청장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부군과 우리 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 알고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김원이 위원**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요.

전임 백경란 청장께서 작은 논란을 큰 논란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불명예 퇴진한 거 잘 보셨을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공직자로서 좀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진자 치료 그리고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김원이 위원** 청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이지요. 이 해제 여부를 오늘 4월 말쯤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미국도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공식선언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WHO의 공중보건위기사태 선언은 공식적으로 국제보건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팬데믹은 사실은 공식적인 그런 구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김원이 위원** 하여간 그런데 어쨌건 WHO가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따라가겠지요. 코로나 종식을 위한 선언을 하게 되겠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단계 조정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측하면 좋을까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저희가 일단 4월 말경에 해제가 되면 그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하여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소소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규홍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중앙일보에 기사가 단독으로 하나

뒀는데요. 지방대 의대생의 43%가,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온, 지방대 의대생이지요. 지방 의대생이지요. 43%가 수도권으로 취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읽어 봤습니다.

○김원이 위원 지방대 의학계열 졸업자로 근무지가 확인된 1만 3700여 명 중 5900여 명, 43%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소 예측은 했지만 매우 충격적인, 거의 50% 가까운 수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지방에 의대가 만들어진들, 지방 의료인력이 배출된들 다 서울로 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역 의료인력의 어떤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김원이 위원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별 의사 수 차이를 발표했는데 이게 10년 전보다 더 벌어졌어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21년 서울이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경북은 2.1명, 전남은 1.67명 정도예요. 지난 10년 전 서울 3.5, 경북 1.8에 비해서 오히려 더 차이가, 격차가 벌어졌어요. 이런 현실은 지역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빨리 구축해야겠다, 조속히 구축해야겠다라고 하는 근거로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공감입니다.

○김원이 위원 작년 국감에도 제가 지역의 의료격차 문제, 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계속 지적했을 때 우리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정원 증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반드시 추진할 거다, 믿어 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거기에 이기일 차관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의대 증원과 맞물려 있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진전을 했어요. 지난 1월 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의사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지금 의료인

력 확충을 위해서,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인프라 확대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근무 체계,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 내용으로 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의료인력 확충이 주요 세 가지 축 중의 하나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작은 진전이라고 봐요. 그런 어떤 장관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실래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의정협 의체하고 1월 31일 날 이런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1월 말에 의협과 논의를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 약속, 그동안의 어떤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는데 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이 위원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세 가지 축 중의 하나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전남과 같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의료인력을, 그러니까 의사 정원 증원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보셨잖아요. 즉 의대 정원 증원이 그 증원된 정원 속에는 의대 신설 몫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것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의 핵심이 뭐냐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를 동시에 좀 해서, 의사 정원 증원을 할 때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이기는 하시지만 복지부장관이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기재부가 얘기한 논리에 대해서 허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526병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진료권 내 종합병원이 15개고 병상 수가 2030년까지 550개 초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이 주변에 있는 그런 같은 진료권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하는 일입니까? 단순한 진료권 내 병상 수라고 하는 걸로 규모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중앙병원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 논리가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적어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남인순 위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셨어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접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병상이 풀린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그런 논리로 하시면 이 부분은 민간 어떤 시장 논리로 계속 하는 건데요. 지금 외상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필수 중증의료 분야는 민간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설계 후에 외상·중증·감염 병원의 모 병원으로서의 배후 진료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수의료 대응 여건 등을 감안해 해 가지고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근데 그거는요 기본 설계에서 미리 반영이 되어야 돼요. 반영되지 않으면, 제가 답변 온 거 봤는데 2차 설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기본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4년간 평균 병상가동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투자를 거의 안 했잖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노후돼서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메르스 대응하느라 그때 다 환자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던 말이에요. 감염병 전문 대응을 하느라고, 이런 원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동률 떨어진다고 그다음에 주변이랑 병상 수가 겹친다 이런 논리로 기재부 논리에 그대로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신……

○남인순 위원 당하신 거지요, 지금. 어떻게 최소한도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2만, 596병상마저도 못 지키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인순 위원 노력한다는 말로 되지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그 기간만 본 게 아니고 16년서부터 19년까지 4년 평균이고 그다음에 병상이용률 자체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보다는 낮다는 거 그거는 중앙의료원에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께서요,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부장관 되시면서 기재부의 논리를, 오히려 허구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복지부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정말 단순하게 공공병원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기간사업이에요. 공공병원의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실시설계……

○남인순 위원 그거 할 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정말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1단계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물론 지금 기재부가 설득이 안 돼서 다 충족이 안 됐지만 이후에 복지부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1단계 설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반영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고 27년 완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진행하면서 기본설계 후에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게 1단계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2단계에서 확장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할 수 있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자료로 취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위로 지원 모금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 아시는 일이고, 지난 참사 100일을 맞아서 2월 5일 날 국회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그때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께서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유가족들 대부분이 시민분향소를 지키면서 거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생계 문제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사회 재난이지요. 있을 때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모금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이걸 자료로 보시면 아실 거고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를 통해서 접수된 걸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접수

가 됐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 익명의 기부자가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같이 울겠습니다’라고 하고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사실 애도의 가장 깊은 표현이 기부라고 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Giving USA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인들이 많은 기부를 해서 충격과 공황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사회 재난에 그동안 해 왔었는데 10·29 참사에 대한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모금의 실시 여부는 모금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신종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3만 3646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진정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백종헌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중대본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발표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과 남인순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800병상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월 수도권 과잉 병상 등을 이유로 526병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께 발표하셔서 놓고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을 상세히 설명해 보시고 그 답변 듣고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때 보도자료 낸 건 아마 요구 기준으로 낸 것 같은데, 저희가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해서 병상이 축소됐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병상 확충,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이후…… 죄송합니다.

○백종헌 위원 지난 9월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 설립에, 보험자병원을 포함해 의료 취약지역 보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본 위원과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백종헌 위원 그러면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서 리모델링 전액 그리고 시설보강비 50%를 부산시에서 부담한다면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진행한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험자병원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데 지역의 의료수급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독자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논의해 가지고 심의가 완료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종헌 위원 그리고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복지부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또 사업 진행 대부분을 협조하겠다는 그런 약속과 복지부를 찾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실무자 간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 위원 장관님은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과 약속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과제로 약속한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결정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다음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이후 다양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립정보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제공 사업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20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고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3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자립정보 ON 앱의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2207건에 불과했으며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총 44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관련업 종사자나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수치인데 실제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채널을 살펴보면 지원 신청사이트나 상담사와의 연결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순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 등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편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종헌 위원 다음 달에는 자립지원 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함께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맞춤형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상호간의 소통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성을 갖춘 웹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30초만……

다음 달 개설될 플랫폼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실생활에 유용한 그리고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하신 후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이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의 여러 지적이 있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복지부가 복지부 역할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약해 보면 지금 장관께서는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답변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기재부 논리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장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원상복구라고 하는 건 요구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800병상은 몰라도 더 병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누구 말처럼 직을 걸고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기재부 논리에 위축되거나 기재부 논리를 대변하거나 그대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이 1건으로 제가 기재부 논리에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장관께서 1건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정치 감사 할 때 그때 복지부는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정치 감사해서 결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고 그렇게 역행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무슨 항변을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 당시에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보장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낭비 요소를 막고 필수의료부분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약화돼서 서민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된 건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축소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논리로 기재부 논리를 여기에도 적용하고 있

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대해서 의견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기재부에서 의견을 낸 게 아니고 결국은 감사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역할을 안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낭비적인 요소는 막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영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가 쪽 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부가 한 일이라고는 법제처에다가 65세 이상자를 70세부터 적용해도 가능한지 이것의 유권해석을 물어봤다고 들었는데 왜 물어본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자체의 자율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에서 할지 안 할지는 자율 사항이지만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연령 조정은 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 등을 추진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연령을 상향시키거나 하려면 단순히 노인복지법뿐만 아니고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연금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다 연동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이번 건은 지자체에서 노인복지법의 65세 이상 조항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의견 조화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 의견이요?

노인 연령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

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이렇게 법령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 자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게 결국은 65세 이상부터는 요금에 대해서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행령이 198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거기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 사항, 재량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노인 서비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 복지부 입장을 어디다 전달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한테 질문은 안 했는데 질문하게 되면 그런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노령 무임승차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과 연동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자체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기를 원했는데 필요하면 저희 복지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지자체 자체 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1984년부터 40년 동안 죽 해 오던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령이 변화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노인복지법의 대표적인 게 무임승차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는 건데 아무

의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복지부장관님 또 식약처장님, 질병관리청장님,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마스크도 벗고 칸막이도 없이 회의를 하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고 더 자유롭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력도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잘 참아 주시고 우리 방역 정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국립중앙의료원,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건 빼고.

저희가 최근 한 20여 년간 2002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6년에 메르스 또 2020년에 코로나19—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사스 때는 32개국에서 774명이 죽었고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세계에서 1만 8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메르스 때는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국립의료원 원장으로 계셨던 전직 여성 국회의원께서 국립의료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들과 아주 긴밀하게, 긴급하게 대책을 세웠고—그 당시 박근혜정부였습니다—식약처에서는 긴급 감염병 진단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만들었고 또 국립의료원도 차후 다른 감염병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보건의료계 행정 공무원들의 그런 기여가 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COVID-19는 만 3년을 국회와 행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립의료원 병상 문제인데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는 아주 원천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 재벌사에서 감염병병원에 5000억 기부를 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부받았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래서 장관님, 이러한 것이 결국은 기후 온난화라든지 세계의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해 글로벌 교통이 해결되면서 일일생활권으로, 감염의 속도도 거리를 떠나서 아주 신속히 감염이 되는 이런 걸 고려한 것으로 볼 때 국립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27년 완공 예정인 국립의료원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또 우리나라 살림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한 사오 년 사이에 계속 신종 감염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의 국립중앙의료원이기도 하고 또 2017년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도 되었고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심한 질병이 돌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데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료안전망인 국립의료원의 역할은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급여 환자의—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지요—진료 비율이 국내에 있는 한 12개 국립대병원은 평균 6%인데 그래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료 비율이 한 26.7% 정도, 거의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상 가동률 그런 것도 고려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의료급여 환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발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들도 원했고, 1955년에 그 병원이 설립돼서—제가 알기로는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가 원조를 해서 생긴 걸로 아는데—지금 거의 한 70년 만에 새로운 병원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국립중앙의료원답게 모든 설비나 규모가 증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정하신 본원 526병상, 감염병 134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760병상에서 1050병상으로 향상하는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감안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아직 완공까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제 의지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한 가지, 감염병병원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측에는 감염병병원 한 150병상 정도를 할 수 있는 5000억이 기부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134병상으로 16병상이 줄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서에는 150병상이라는 얘기가 없고 기부자께서 기부하신 7000억 중에서 5000억을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병원을 짓자는 게 기부자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나 물가상승 요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몇 년마다 짓는 것도 아니니까—깊이 숙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장관님, 올 겨울 한파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시설들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의 한 그룹홈인데요. 운영비 지원은 47만원인데 난방비가 1월만 해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포항의 그룹홈인데요. 여기는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64만 원은 결제했고 미결제한 것이 30만 원, 그러니까 94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건 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해서 전화했더니 그룹홈의 센터장님이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한 사례인데요. 광주 남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인데 여기는 방학이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부터 보일러를 틀어 놓고 있는데 1월 난방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2월은 난방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전국에 4000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 500개가 넘는 아동그룹홈이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1월에서 2월 두 달간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 실제적으로는 LPG 자체가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집 자체가 냉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굉장히 외풍도 심하고 이런 곳이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면 도시락만 들려서 그냥 집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특히 방학이라 아이들이 훨씬 오랫동안 생활해야 되고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아이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돌봄의 공간일 텐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다음은 필수의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병원의 PA 간호사 공채에 대해서 병원을 고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데 국·사립대, 민간, 공공, 수도권, 지역 할 것 없이 PA를 남용하고 있고 포털 검색만 하면 수십, 수백 개의 공채가 검색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은미 위원**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실상은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이고 결국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없는 상황 등등 해서 의사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대책은 의정 협의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 협의로 이게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가령 독일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의대 정원을 50%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의료계도 급역·비급역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의사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파업까지 한다고 단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1분만……

실제로 다양한 현장의 구성원들 그리고 환자 그다음에 국민 그리고 보험 재원 문제까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20년 9월의 의정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환자 단체라든지 다른 단체하고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논의되고 나서 추후에 보고할 때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울 텐데, 문제는 지금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논의하는 초기부터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논의하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리고 의대 정원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영미 청장님 새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과거 메르스 때 맹활약하셨고 WHO 활동 등 전문가로서 감염병에 대응해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큼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모든 분들께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행해야 될 시점입니다.

10·29 참사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병 재난이라면 10·29 참사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의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 선진화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참사 직후에 부상자, 사망자, 그들의 가족과 현장 구호자 등에 의료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상자들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고요. 유가족들은 100일이 지나도 여전히 불안, 불면, 스트레스, 식욕부진, 소화 불량, 진신 통증 그리고 10kg까지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등 건강관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신현영 위원 현재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29에 충분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게 완전 치유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또 한번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예,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1월 30일 기준으로 봤더니 총 214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183명 부상자

이고요. 유가족은 16명이 지원받았는데 총 합쳐서 1백만 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것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청구 방식은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도 있고요, 환자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절차가 사실은 복잡해서 청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도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정부가 공무원과 지원 지침을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우선 6개월 지원하고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의료비 지원기간을 언제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는 완치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우선인데 특히 정신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그게 또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문가분들의 의학적인 그게 있어서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의사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그 당시를 한번 끊어 가지고 재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가지 6개월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현영 위원 참고로 세월호 특별법에는 2024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29 사례도 이러한 연장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중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 진료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상 안 해 줄까 봐 의료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상자들은 재활치료 받아야 되고요. 유

가족들도 앞으로 의료 지원이 더욱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적극 소통해서 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장관님, 이분들에 대해서 주치의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제안을 해 주셨으니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여러 다발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1차 의료의 주치의제도를 한번 이번에 접목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코호트 구축을 해서 장기간으로 의학적·사회경제적 영향이나 이런 지표들을 폴로 업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의 재난 대응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검토하실 수 있겠나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코호트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랑 소통하면서 장기간의 추적 효과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요.

정부가 정의한 지원 대상에 따르면……

1분만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사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의 범위 어디까지로 지금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직계존비속이지요?

○신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이모나 고모 이러한 피해자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포괄해야 되지 않는지, 저희가 재난연구원의 연구 결과보고서 보니까 피해자의 유형 중에서는 가족들, 친척, 친구까지도 포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선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 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빠진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이모나 고모, 친척까지도 한번 이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간병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병비 급여에 대해서도 예전에 약속하신 만큼 유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간병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건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민간 기부금 등 활용방안 등을 국조실 등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장관님, 얼마 전 2세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집에 혼자 남았던 두 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인 올 1월 이 아동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입수된 정보에는 정기 예방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적도 없는 일명 아동 특화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위기정보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됐고 조사 대상자에서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국가 시스템은 위험도가 낮다고 분류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 특화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천 2세 아동 사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기정보 44종을 입수하고 있는데 아동의 범위가 18세 이하로 이렇게 넓다 보니까 영유아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 2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미진료만 봐도 한번 방문,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조사 대상 선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발굴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재근 위원 저출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아이 낳아라, 낳아라 해도 못 낳는데 낳은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래서 아동학대로 죽이고 이렇게 위기 발굴을 못 해서 죽이고……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여전히 적고 10년 가까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여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우려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확대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책으로는 병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달빛어린이병원 자체의 확충도 그렇지만 소아 관련 응급진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골든타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하려고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보호자가 검사비를 납부할 필요 없이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보호자가 검사비를 선납하고 나중에 보건소에 청구하면 사후에 정산해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1인당 지원비용이 약 13만 원 정도입니다. 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겠다고 해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직접 선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고요.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이 방식도 원래는 보건소를 두 번 방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선부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와 관련해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2019년에 그 신호가 왔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급격히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져서 종합병원 소아과나 응급실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해왔고 따라서 특히 소아 중환자실이나 소아 응급 관련해서는 의료 붕괴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난달 31일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의료인력을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로 마련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또 필수의료 지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건보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2030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서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일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는 2월 중 건보재정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얼마의 재정이 소요가 되는지, 이게 확정되어야지 건보재정 효율화로 얼마를 커버하고 재정당국과 얼마를 협의해서 추가 지원을 받겠다는 그러한 것이 확정될 것인데 재정소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대책을 보시면 저희가 금방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후 보상 문제라든지 현장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재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대책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재정 소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단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출 효율화 체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자체, 그러니까 수가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수입 측면에서의 보험료를 수준 그다음에 국고 지원 수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위원 하반기 정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재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그게 실효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최재형 위원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우선 소아청소년과 입원가산과 관련한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세 미만의 경우에 50% 확대하고 또 1~6세까지는 30% 유지 그리고 6세 이상 8세 미만에서는 아마 이걸 제외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입원과 관련해서 이것만 보면 오히려 6억 원 정도 병원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마 신생아실 입원료 20% 인상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신생아 시설이 없는 1차 아동병원이나 2차병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현장의,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또 현장의 실제 상황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현장에 실효적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좀 주시면 추가질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대책에 소아 관련 부분은 1차 진료를 강화한다는 파트가

있는데 저 지적사항은 제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너무 줄어 가지고 소아과병원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전공의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아과 전체적인 수가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정확합니다.

○**최재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미리 발표해 주서 가지고…… 전공의가 들어오는 데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투입하려면 한 3, 4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인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로드맵을 좀 미리 발표하셔서 가지고 전공의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미리 발표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사후보상 모델도 개발할 거고요 또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 분야의 의사 양성도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아와 관련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하여튼 그런 전공의 관련해서는, 수가 관련해서는 미리 안정적인 시그널을 의료시장에 좀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숙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해숙입니다.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기재부 출신이라서 복지 마인드가 없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단점은 있지만 장점 중의 하나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 많이 따왔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는 걸로……

○**전해숙 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그 당시 20%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래서 일몰 조항을 거기서는……

○**전해숙 위원**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기재부를 설득해서 저희가 5년 한시 재연장을 합의했는데 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서 가지고 추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해숙 위원** 5년 연장 확실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전해숙 위원** 법안 통과도 시켜야지요, 앞으로는 일몰 연장이 아니고 확실하게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가능성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5년 연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입·지출……

○**전해숙 위원** 예, 5년 연장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해숙 위원** 그거 그때 약속입니다.

사실은 지금 물가 폭탄에다가 난방비 폭탄, 교통비 인상…… 국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도 또 1인당 2만 원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아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숙 위원**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저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숙 위원** 이걸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제 욕심 같으면 한 2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23.1%고 대만은 31.7%, 프랑스 같은 경우는 63%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꼭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

습니다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어 버려 가지고 번복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병상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지하주차장 확보하고 기계, 전기, 시설 인프라를 필요한…… 밑에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더 넣더라도 지금 그 부분은 원위치대로, 지하 설계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병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못 했는데 살펴보고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차관님들도 꼭 챙겨 주십시오, 장관님이 혹시 이해를 못 하시면.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의 국비와 기부금 분담 비율이 국비가 0%, 기부금이 100%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부금으로……

○전혜숙 위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혹시 못 느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기부하신 분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전에……

○전혜숙 위원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하면 이건 ‘이건희 병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게다가 앞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면.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일부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건축비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한테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염병병원 같은 거 지을 때…… 지금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자재비 오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기부자분들과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부하신 5000억 내에서 훌륭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고……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부는 부지 제공하고 향후 운영비를……

○전혜숙 위원 그렇지요. 5000억 내에서 우리가

같이 합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그것도, 기부자의 뜻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혜숙 위원 기부자의 뜻은 자기들 돈만 쓰라는 겁니까? 정부하고 같이 협업하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정부하고 협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고 또 부지도 제공했지 않습니까?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혜숙 위원 면밀하게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점심 식사와 휴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춘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익힐 기회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연숙 위원 한창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뛰어 보면 숨이 찬 건 사실이잖아요. 산소 부족도 경험을 했고 하는데 아이들의 뇌 발달과 성장에 영향이 없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연숙 위원 있다고 봐지지요?

그렇다면 발달 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연구 뭐 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직접적으로 복지부가 행한 연구용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육아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의 대학에서 이런 것 비슷한 연구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 내용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물론 외국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례도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팬데믹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합금지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으로 방역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신체활동이 줄고요. 국민들의 우울감이 증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신체활동 실천율이 5.0%나 감소를 했고요. 우울증 환자 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19~21년 비교자료를 보면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신체활동 실천율도 떨어지고 우울도 증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됐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동안 방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엔데믹 이후의 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지금 네덜란드나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을 보면 실내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면역증강을 시키기 위한 국민들에게의 홍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도 빨리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청장님, 지난 7일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격리기간을 WHO의 결정을 지켜본 후에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료 종사자의 격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될 당시에는……

○최연숙 위원 아니, 며칠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지금 7일 격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만……

○최연숙 위원 7일이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최연숙 위원 청장님, 바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7일인데 그걸 아마 현장에서 잘…… 그 변화된 걸 모르고, 지금 단계에서는 환자 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 7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현장에서 잘 모르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최연숙 위원 아니, 현장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병원마다 3일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고 7일 하는 데도 있어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이게 10만 명 이상 될 때가 3일이었고요.

○최연숙 위원 2022년 2월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최연숙 위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하고 의료 종사자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되는 거지요? 의료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렇지요.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가요? 지금은 1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지금은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빨리 정책을 피드

백시켜야 되는데 하셨나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잘 살펴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WHO 기준의 의료 종사자는 3일이나 5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의 격리기간은 WHO의 기준을 보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하고 지금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 더 잘 관리가 돼야지만,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더 면역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은 아마,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3일이나 5일 쉬고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했나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저희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의료인력들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최연숙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했느냐고 묻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보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연숙 위원** 다음에 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또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핵심이 모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조금 짚어 드릴게요.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6개월 만에 발표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런데 이 지원대책을 보면 이게 과연 6개월간 고민한 대책인가, 그렇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평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포함해서 재정 확보 방안까지 이런 게 다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재원 대책은 정확한 추계를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렇지요?

통상의 정책을 시행하면 구체적인 소요 재정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재정 규모 공개가 안 됐어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하면서 장관께서는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만 답을 하셨어요.

필수의료 재정이 건보재정 효율화 결과에 좌우되어야 하는 겁니까? 건보재정 효율화가 계획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절감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일단은 최소화해서, 일단 낭비 요소를 줄여 갖고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건보가 아니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그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재정 당국에 요청도 했고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건보재정 효율화 결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보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규정 삭제는 또 소극적인 입장이고요.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필수의료에는 건보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이런 논리입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낭비 요소를 줄여 가지고 필수의료 확충 쪽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또 수익구조도 봐 가지고 그것을 지속가능성도 올리면서 또 보장성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정말로 이게 필수의료라면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소요될 재정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는지 장관님, 혹시 추산된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제도를 보시면 당장 추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가지고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당장에 구체적으로 추계 가능한 규모 안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글썄요, 그것도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확인해서 관련된 내용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 의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말뿐이고요 예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을 할 건지 말 건지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 때 필수의료 정부지정센터에 대한 공익적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정처를 통해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요 권역응급 또 외상, 심뇌혈관센터 손실보상에 연간 약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손실보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공감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리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당시에 제가 필수의료 정부지정센터 공익적 손실보상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증액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이게 편성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라고 판단을 한다면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보건복지부가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번에 필수의료 대책을 보시면 일단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해 필수의료 지역 간 그다음에 진료과목 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사후보상 같은 경우는 중증 소아진료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10개소 중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많이 수척해지시고 슬림해지셨네요.

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는 있지만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생교육 내용 중복·부실, 위생교육 중 물품판매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교육 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장관, 매년 위생교육 관련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난 2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현황에 따르면 9개 업종 위생교육 관련 민원은 총 80건으로 매년 4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낮은 교육의 질, 부적절한 내용, 강사 구성, 교육비 등 교육 내용 및 운영에 대한 민원이 23건에 달했고 제도 개선, 협회 관리·감독 요청, 회원·비회원 차별 등이 11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위생교육 유예 및 면제 요청도 22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위생교육 품질 향상 및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를 통해 위생교육단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교육 운영현황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법인 정기감사를 통해서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본 의원실의 요구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차관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차관이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의 관리, 기타 위생관리에 관한 관심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내 위생관리 수준은 공중 위생관리법상 강제되는 80년대 수준과 비교해서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에 따라 각 업계, 업소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위생관리가 없이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도태되고 지속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생교육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행정통제를 현 시대 상황에 맞춰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나 여론 수렴, 향후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생교육 관련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만일 법이 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 위생교육기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 장관님, 장관님 계실 때는 아는데요 제가 2021년도 국감 때 성매개감염병, 흔히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데 이 진료 내역을 활용

아동학대 발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복지부가 이 질의 내용을 반영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반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현장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국립중앙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부가 신축·이전 사업 규모로 요구했던 병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760병상이 확정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그렇지요?

혹시 의료계의 우려점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국립중앙의료원 축소안은 필수의료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최근 개원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을 보면 거의 700~800병상 정도 되는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돈을 들여 지어 놓고는 분명히 감염병 상황에서도 활용 못 할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혈세 낭비라고 질타할 거고 또 부실 병원이라고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려해서 2차관님께서 지난해 발표하셨지요, 7일 날? 향후 병상 확대를 재정부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일시적인 수습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장관님께서도 노력하겠다,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재부를 설득해 보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짓고 난 다음이 아니고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혜영 위원 지금 말씀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기재부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축소된 이 병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을 해

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리고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환자단체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요, 필수의료 보장대책이 아니라 필수의료인에 대한 보장대책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일부 환자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아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의료인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러한 부담 때문에 필수과목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래서 한번 보겠다는 얘가지요.

○최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추진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중재·조정 이런 걸 하는데 그러한 요건도 좀 쉽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환자단체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의료 부담도 완화하면 원원도 할 수 있고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 그것도 확충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혜영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됐든 환자단체에서는 우려점이 많고요. 실제로 우리 의원실에서도 의료사고로 인해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환자나 또는 유가족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 주시는데요. 거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해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서 일어난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마저 제정된다면 분명히 국민

들의 불신 그리고 환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래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작년 국감 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안이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요, 의대에서 정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최혜영 위원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그리고 입증책임 전환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이제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주장하는 내용도 잘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장관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기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언제까지 연장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원래 2월 8일까지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종성 위원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지난 12월 하순 말경부터 계속 조사를 요구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그리고 경찰에서도 12월 말경에 수사를 착수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장 조사가 늦어지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이태원참사조사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특위에서 나오는 내용을 모두 포괄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 가지고 조사특위가 끝난 다음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통지 후 기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2월 2일부터.

○이종성 위원 그런데 그 실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 특위에서 추가로 나올 만한 것들도 없었고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늦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아니면 국정조사까지 다 마치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누구누구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업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장관님도 이 사건, 실정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업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검사 결과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조사 중간결과 같은 것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없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래서 해당 조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DMAT팀 소속으로 긴급재난 상황에서 정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응급의료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하고도 욕먹었다,

앞으로 DMAT 업무에서 빠지고 싶다. 저를 책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유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DMAT팀 분들한테까지 큰 상처를 드린 사건이니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원인 또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맞는 법적 처분까지 확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리고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되거나 복지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질까 봐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응급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는 분들의 좌절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욱 절실하게 사실 규명과 확실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계기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지금 솔직히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많은 인식을, 인상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이태원 사건하고 관련해서 법률적·행정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또 이를 위반한 과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분풀이를 위해서 또 마녀사냥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결국 행안부장관이 공식이 됨으로써 국가재난시스템 개편이 지금 한참 논의돼야 되는 이 시점에……

1분만 더 주세요.

한참 논의돼야 되는 이 시점에 담당 장관이 공식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재난 응급 대응에 모자란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지난번에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도 재난 상황에 관련해서 보건소장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시겠다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행안부·경찰·소방 이런 관계부처들과 후속 대책을 면밀하게 논의해서 재난의 규모·형태에 따른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참여되는 응급의료팀 또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권한, 역할, 책임 등을 더욱더 명확히 해서 결국 권한 없는 사람들의 쇼질이나 갑질이 일어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 필수의료 대책에도 이송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강화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저는 지영미 질병청장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병청 그리고 식약처, 보건복지부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 얹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처와 또 청에서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것 중의 아마 주요한 내용들을 여기 담은 것들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 통과시키면서 올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잠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3년 차 들어오면서 보면 백신접종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더 이상 백신을 잘 안 맞는 수준에 와 있는데 코로나19는 잦아드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거리 완화나 또는 여러 가지 방역상황 해제 등과 관련해서 지금은 백신을 조금 덜 맞아도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좀 덜 할 것이다, 그전과는 다르다라고 저희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질병청도 염려하듯이 아시다시피 이런 팬데믹이 몇 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은 지금 잘 안 맞는다 하더라도 차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백신을 또 안 맞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들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이것이 과연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 차가 되었고 여러 선례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준이나 검토 내용들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보완을 해야지만 이 향후에 생기는 어떤 팬데믹에 또 ‘백신을 다 맞읍시다’라고 할 때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맞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면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헬스 개념을 이미 미국의 CDC도 그렇고 질병청도 그렇고, 질병청 사이트를 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쪽에 되어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그리고 체험형 동물원 증가 이 2건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CDC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아예 오랫동안 걸쳐서 반려화가 진행된 동물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나 또는 기존의 자연환경으로 있었던 것을 개발함에 따라서 그 자연환경에 존재하고 있었던 동물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생동물에서부터 얻어지는 또는 불가피하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를 사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커스가 조금은 달라야 되겠다.

또 하나가 우리가 밀집 사육하는 것, 도심화 증가되거나 또는 야생동물 사육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마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라든지, 여기는 어쨌든 축산과 관련된 밀집 사육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환경부·질병청 할 것 없이 이렇게 잘해서 원헬스가 환경도 건강하게, 사람도 건강하게, 동물도 건강하게 각각의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오유경 처장께도……

너무 눈을 동그랗게 떠서 보시면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오늘 첫 질문을 해 주셔서요.

○한정애 위원 그런가요?

8쪽에 식의약산업의 친환경 체질 개선 유도 부분에서 재생·재사용 부분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2022년에 PET를 물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고요. 이번에 그것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까지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탈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이 염려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만들면서 이미 해외의 사례들까지를 참조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드디어 우리도 오가노이드와 관련한 부분들을 해 놓으셨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 수립과 관련돼서도 지금 여기다 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도 유해한 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하고 있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환경부는 전체적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역시 동물실험, 식약처가 제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식품부 역시도 농약이라든지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산업부는 공산품이나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실험들이 병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동물실험을 꼭 하지 않아도 의약품 신규 인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가노이드라든지 관련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사업화되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관계 범부처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하고 법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올해는 꼭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위원** 장관님, 우리가 요즘 위기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대책을 잘 내오지 않거든요. 그중에 여야·세대·이념·진영을 떠나서 하는 위기에 공감하는 게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입니다.

특히 인구 위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복합적이기도 해서 또 넓기도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잘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이 분야는. 왜냐하면 저출생률을 제고하는 건 기본인 거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다음에 저출생이 시작되고 초고령사회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 소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거버넌스로 구축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복지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지하철 요금, 요즘 논란이 많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그래서 이제 대구시는 6월 달부터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요, 65세를. 대전시도 9월 달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러고서 기재부한테 얘기를 하면 기재부는 ‘지자체 고유사무다. 왜 우리가 그걸,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연령인데 연령, 이게 노인복지법 26조에 있는 것 때문에,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시행령을 또 구체적으로 다 해 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무임승차 관련된 문제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84년도에 무임승차를 도입할 때는 65세 이상이 5%밖에 안 됐어요. 내후년 되면 20%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무임승차뿐이 아니고 사실은 복지부 소관 사항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연금 수급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의료체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고용 이슈로 가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 논의는 반드시 단순하게 무임승차라고 하는 예산 적자와 관련된 것으로 논의가 될 게 아니고 이걸 전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장관님도 갖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중에 핵심 중의 하나가, 큰 의제 중의 하나가 연령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걸 복지부가 저는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그래서 지금 65세를 그러면 이 상한의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이거는 복지부만 소관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저는 복지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복지부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무임승차 문제가 아니라 연금개혁 그다음에 건보 개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최종윤 위원** 아니요, 장관님 주도적으로 잘 안 하셔.

그러니까 법제처에 제가 유권해석 의뢰한 거

보니까 무임승차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정도를 의뢰해 놓으신 것 같은데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니까 70세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여기 우리 상임위원들 다 복지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최종윤 위원 그런데 우리 장관님 이하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맨날 의제를 따라가지 마시고 던지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제발 하나 부탁드립니다. 거는 뭐냐 하면 연령 논의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좀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재부, 노동부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보완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과제로 일단 선택을 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침과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자체가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240만 가구가 넘어가는데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의 반도 안 돼요, 지금. 왜 그러냐 봤더니 물론 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됐지만 작년에 문제 됐었지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장애 발생해 가지고 산업부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복구가 된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많이 좋아졌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조치를 할 건데요.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수급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지자체에 쥐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산업부장관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기초급여 신청을 할 때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신청해 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회보장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정보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최종윤 위원 이 신청주의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한번 이것을, 지금은 대체적으로 잘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 누락된 것도 많은데 신청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꿔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게 신청주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효율적인지 또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래서 장관님 이걸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오랫동안 누적된 얘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많은 논쟁이 있었지요.

○최종윤 위원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복지 대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청자 발굴하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장관님 CES라고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게 이제 첨단 혁신기술, 미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데인데요. 이번에 테마가 다섯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헬스였어요. 제가 다녀왔는데 가서 국토부장관도 보고 과기부차관도 보고 산업부도 보고, 우리 복지부도 갔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는 못 갔습니다.

○강훈식 위원 장관 말고 다른 우리 복지부 직원들은 갔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못 갔습니다.

○강훈식 위원 가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바이오헬스, 대통령께서 복지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도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스타트업 생태계 같은 것도 구축에 나서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복지부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냐면 첫날 제가 대기업관에 갔는데 롯데헬스케어가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영양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렇게 쪽 나오는 것을, 정수기처럼 생긴 기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날에 제가 스타트업관을 갔는데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이 매우 비슷한 기기를 선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거기서 ‘똑같은 게 대기업에도 있던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도 답답하다.

근데 이 알고케어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자신의 기기를 롯데에 시연하면서 협업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래서 기술 탈취를 주장하고 있어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런 건 정말 잘 아는데 이렇게 희생당하는 바이오스타트업들이 많다, 이게 본인 주장입니다.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 이게. 장관님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봤습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추적해 봤더니 이 스타트업과 롯데가 단 며칠의 시차를 두고 인공지능 기반의 영양제 배분 기기가 식약처 규제나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 식약처로부터 다 확인을 해요, 같은 시기에 며칠 상간에. 식약처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혁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스물다섯 번째 국정과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술도용 문제가 보통 이렇게 되면 산자부나 특허청의 문제다 이렇게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문제 인식입니다. 복지부가 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훈식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 제가 연초에 우리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이 펀드에 대해서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 건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고 CES라는 공간에서 5개 메이저 트렌드 중에 바이오헬스가 있고 우리나라의 스물다섯 번째 국정과제에 바이오헬스가 글로벌 국가로 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바이오헬스의 스타트업을 보호할 방법은 복지부는 없다 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중기부한테 가서 부탁하고 특허청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되면 바이오헬스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바이오헬스를 하겠다는 기업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다들 거기 가서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계획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역할이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구호만 있는 거지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구호만 있고 집행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돈도 예산만큼 못 세우고 또 이런 기술 있는 스타트업을 지킬 방안도 없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디지털헬스 산업 도약 전략 방안을 1/4분기 안에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많이 연구를 하

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법적인 그게 필요하다면 오늘 상정이 됐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도 필요하다면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훈식 위원 좋고요. 이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중소기업부랑도 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있을 텐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6년입니다. 6년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중기부에 가면. 그런데 바이오헬스는 1상, 2상, 3상 가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복지부가 내야 되는 안인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제가 볼 때 구체성을 가지고 복지부와 관련된 것들…… 이걸 실제로 가 보면 CES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세우는 바이오헬스 스타트업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안과 중기부·산업부가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지원될 수 있고 구체성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기술 탈취와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방안들을 일괄적으로 준비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전이라도 중기부와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기윤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훈식 위원께서 앞으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바이오헬스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기조를 갖고 있지요, 전부 다. 그런데 다행히 강훈식 간사도 이것은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실질적인 법들이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세세히 좀 따져보고, 오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바이오헬스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야당 위원들하고 잘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헬스가 좀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장관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제가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국회에 여야 특위가 만들어져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연금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여러 가지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요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구조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강기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의 하나가 보시는 바와 기금 운용을 좀, 900조 원 가까운 이 기금 운용을 지금 전주로 본사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기윤 위원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또 기금 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서 그러는지 기금 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가 4.99, 캐나다가 9.585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기금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 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주 여건도 많이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수익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 10년간은

저 숫자가 맞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년, 5년, 15년 이렇게 해 보니까 반드시 뭐 꼴등은 아니고 어떤 때는 다른 기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뭐 그게 자랑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기금의 경우에는 장기 수익률이 중요한데 장기 투자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투자라든지 대체투자 같은 비중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인력을 유치를 해 가지고 기금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두 번째 국립중앙의료원인데요, 아까 아침에 우리 고영인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중에 장관님께서 이게 기본설계 후에 총사업비 조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당초에 목표한 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중앙의료원이라는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우리 공공병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강기윤 위원 그래서 기본설계 후에 총액 부분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기본설계부터 어떻게, 우리가 기본 병실을 1000병상을 할 건지 800병상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의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와 같은 것을 기재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중앙의료원이 가져야 할 목적 자체가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반드시 당초에 목적인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각별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하고 지방 이양 사회복지시설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격차를 해소해서 종사자들 서로 간의 그런 이질감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더 나아가서 지역아동센터도 마

찬가지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등이 많습니다. 특히나 호봉제를 도입하는 지자체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일관성을 갖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반드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는 유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기윤 위원 예,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어린이집은 3세부터 5세입니다.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그냥 다시 보내는 현상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또 3~5세 똑같은 나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것은 무상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은 유상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장관님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 관련해 가지고는 유치원은 지급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지급하지 않아서 일단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올해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이 발족을 했거든요. 거기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明姬 위원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인데 거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늦은 이유는, 지금 2시부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12시부터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거기 가서 축하도 하고 개회사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위원님들 중에 국립중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고, 아마 지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따로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런데 다들 축하도 오시고 정책위의장님도 오시고 이명수 의원님도 오셔서 축하하시면서 이야기가,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 오늘 사실 기재부에서 과장님이 패널 하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결국은 우리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거의가, 100조 가까운 게 복지고 의료는 7억입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적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 국가의 얼굴이고 중증의료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관인데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 때 의료수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오셨는데 1월 중에 TF팀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국회 4년째입니다. 보니까 법안이나 국감 때 지적한 부분이 폴로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요. 법안도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시행안도 동의해서 법안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저희 의원실로, 지금 의료수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제가 보니까 오늘 질병관리청 첫 회의인데요.

아까 빅데이터 정책을 보니까 해마다 좋은 내용을 다 씁니다. 빅데이터, ICT 기반, 뭐 굉장히 좋은 단어는 많은데, 제가 오송도 가 보고 하면 전산센터가 엉망이에요. 전연 데이터도 없고, 제가 원주에 있는 심평원 ICT센터 국감 할 때도가 보니까 CDM 25%밖에 대응 못 하는 거, 서비스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홍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안의 내용은 정말 빈 깡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 빅데이터 부분, 오송에 저

희가 조만간에 한번 가겠습니다, 청장님.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준비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또 실망시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DB가 얼마나, 항목이 어떤지 제가 저희 팀을 데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曹明姬 위원 식약처도 올해 첫 회의니까요.

저희가 메르스, 코로나19, 옛날 신종플루,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해에 보건복지위에서 강조했던 게,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메르스팀들이 보건복지부의 거의 중요 중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백서를 보면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놓고 5년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백신도, 치료제도. 그러니까 폴로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백신 등급이 10등급까지 있다면 초기의 아주 가벼운 신종플루 대응이나 어쨌든 간에 감염병 그런 연구도 외국하고 같이, 일본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안 났다 이런 민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제때제때 미리 예방 차원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좀 센 백신만 필요하지 아주 약한 백신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미리 감염병 대비한 예방 백신 같은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KBS대구에서 옥창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옥창에 관해서 특집을 했습니다. 아마 방영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옥창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노인병 중에, 치매나 재활이나 옥창이 노인병인데, 앞으로 거의 50년 뒤면 반 이상 인구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창에 관한 우리나라의 그러한, 뭐 식약처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와 다 같이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그런데 옥창에 관한 이런 시스템이 너무 우리나라는 허술한 거예요. 민간하고 공공이 있다면 데이터도 다 흩어져 있고 가족이나 간병비가 보통 삼사백은 드는 거예요. 가족 파탄이 나고…… 옥창은 2시간마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나

이런 장비가 너무 엉망이고, 제가 너무나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욕창에 관한 전문적인 돌봄 시스템, 민관 통합 시스템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욕창 관련해서 노인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제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너무 혼자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욕창을 비롯해 가지고 노인성 병에 대한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는 돌봄, 요양, 의료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봐 가지고 통합 판정도 하고 같이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법을,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대책이 나오는 대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또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2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취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득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이든 누구든 간에 앓을 때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연대적 측면이 강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보면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더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의료

남용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무임승차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임승차 논란은 제가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외국인들의 먹튀 논란을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내국인보다도 건강보험료를 내서 오히려 건보 재정에 몇천억의 흑자를 준 게 외국인이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한번 시켰었고요.

또 의료남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전보다 문재인케어를 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가려고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2020년 7월 28일 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 건보 재정이 1년에 한 100조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동안 18년에—즉 어떻게 보면 문재인케어가 시작된 해라고 볼 수 있겠지요—8개의 초음파, 그다음에 3개의 MRI 이런 항목들을 급여화함으로써 4년 정도의 손실보상 1907억 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했어요. 1년에 기껏 해봤자 한 500억 정도가 손실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조에서 500억이면 몇 %입니까? 0.05%예요.

과연 이것이 곧바로 다 손실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다해서 됐다는 그런 예상성·추측성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것이 남용됐는지는 더욱더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이 이전에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아파도 참았던 것들을 좀 더 의료 지원을,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고 굉장히 적은 극소수의 남용 사례를 가지고 오히려 세계적 추세,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를 지금 후퇴시키는 이러한 것들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이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말씀드릴까요?

○고영인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대통령님께서 보장성을 약화하라고 지시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낭비 요소를 제거해서 필수의료 확충에 힘을 쓰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고영인 위원 아니, 장관님 스스로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표현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요.

○고영인 위원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의 철학, 진의를 우리가 파악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말귀…… 그게 아니고요.

○고영인 위원 지금 분명히 보장성 강화에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별 효과는 없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낭비적인……

○고영인 위원 이것을 보면, 뭐든지 낭비는 우리가 줄여야 되지요. 이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런데 이 표현이 보장성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정책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위축시키는 게 맞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 않고요.

○고영인 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저희가 정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보시면 저희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장성……

○고영인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을 비롯한……

저도 1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 이런 우려가 크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방침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심사 부실 이외에도 과도한 손실보상 그다음에 과잉진료 유발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비중이나 규모 문제가 아니라, 또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MRI나 초음파가 3년간 10배가 증가한 건 이견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365번인데 1000회가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도 올리려고 하고요.

○고영인 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몇 가지 극단적인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건강보험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질책하는 겁니다. 몇 가지 변명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알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고요. 필수의료 대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구울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자율방역 기조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대규모 감염병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8000개의 중환자실이 있는데 대부분 다인실 구조입니다. 맞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를 1인실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인실은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차감염 우려 등 신종 감염병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 메르스 때도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지요.

장관님, 중환자실 1인실 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수요를 감안해서 1인실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시급합니다. 1인실 구조로 변경되면 유행 직후에 바로 격리실로 바꿀 수 있고 코로나 때처럼 병상 확보를 위해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문제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 1인실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병상당, 한 병상을 1인실로 전환하려면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데 이것을 모두 병원에 떠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부만이라도 지원해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짧게 좀 추가질의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경로당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렸는데 아직도 냉난방비·양곡비 통합 사용 사실을 모르는 곳이 있어서, 저한테 그걸 호소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통합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현장에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부분이 신속히 정보가 제공되어서 탄력적으로 통합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경로당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 식약처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약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지요.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또 하나 이 범죄의 심각한 특성 중의 하나는 재범률이 35% 이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김미애 위원** 이것은 의존성·중독성이 매우 높아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과 재활을 통한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김미애 위원** 식약처장님,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마약 근절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그때는 필로폰 중독자를 제가 더러 만났는데 예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파탄 내는 건 물론이고 사회를 병들게 했지요.

그래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사업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올해 구체적으로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설명 중에 참여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중독재활센터 추가로 신설해서 세 곳으로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은 24시간 헬프라인을 운영해서 상시 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 마약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예방 재활을 위한 방안과, 지금 심각한데 아직 이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중독재활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지만 일단 1개소만 이번에 예산이 지원돼서 2개소에서 하나로 되고 그 위치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디지털 세대인 것을 감안해서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가상현실 같은 것으로, 좀 더 참여형으로 디지털 세대에 맞는 눈높이 예방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4시간 센터에 관해서는 지금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재 생각하는 것은 한 군데 새로 증설되니까 거기의 인력을 일부 활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24시간을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올해 더 예산을 적극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제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하나 물어볼게요.

간호법인데요. 22년 5월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동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저희가 법사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기억하시지요? 그때 장관은 아니셨을 텐데 보고는 받으셨지요?

옆에 계신 차관님들 잘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담당이었으니까.

아마 여야가 정말로 오랜 숙의와 논의 끝에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하고 법사위로 넘기게 됐는데, 정부 동의까지 해서 넘겼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이상 끌고 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간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금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늘어지면서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좀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거든요. 5개……

○김원이 위원 장관님, 그 얘기는 이미 전임 장관 때 다 합의가 돼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알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간호협회와 정책협약까지 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내용이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속히 우리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좀 조속히 처리할 테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염병병원도 기부금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원 같은 경우도 한 500억 정도 투입하는 정도더라고요. 너무 인색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진짜 30년, 50년 갈 일이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응급센터, 심뇌혈관, 모자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중증의료고 여기에 대해서 병상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제대로 기능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596에서 526으로 하면서 여기 병상이 임상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포함됐어요?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 과정에서 다 반영이 돼야 돼요. 아마 재정을 1·2단계로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2단계를 할 때는 사실 장관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27년에 1차 완공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차 완공 이후가 아니고 기본설계 이후에……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이후에 그게 어떻게…… 기본설계에 반영이 돼야지 어떻게 기본설계 이후에 합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합시다, 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기재부랑 협의한다고

해서도 그 안을 갖고 온 게 너무 소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걸. 진짜 저희 위원들은 이 문제 갖고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호소하고 싶어요, 이것 제대로 만들자. 이것 정말 웬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유념을 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적극 협의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적이 나왔으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질병청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피해자들이 여전히 시청광장에서 거기에 영정 모셔 놓고 있는 건 보셨지요? 거기 가 보셨어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가 봤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전체 사망하신 분이 약 이천오백여 분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기저질환이 없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더라도 포괄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고 있고 관련법도 지금 아직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위로금 대상자 확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저희가 지금 관련성 의심 질환 중에서 인과성 인정 질환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중에서 그걸 두 배씩,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히 두 배까지 확대하는 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 지원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더 아주 폭넓게, 굉장히 넓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지금 특별법이 상정돼 있어서 그 관련법에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재심의 관련, 재심의위원회 관련 그다음에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 그런 것들이 포함된 특별법을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거기 가족들과도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남인순 위원 장관님, 이번에 난방비 문제가 좀 있어서,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부분을 복지부가 많이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좀 빠졌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좀 빠졌나요, 대책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사회복지시설……

○남인순 위원 차관님,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어린이집은 빠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것 왜 빠졌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주로 생활시설하고요, 이용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린이집 얘기인데요. 갑자기 한 달 만에, 거기도 하여튼 간에 전달 대비 90% 이상 난방비가 올랐는데 여기 왜 빠뜨립니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당초 생활시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년 2월에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제 종료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언제 내려오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그 해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지영미 청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4월 이후에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4월 달 말에 아마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엔데믹이 되면 지금 얘기한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럴 의향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는 비대면 진료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좀 약한 그런 의료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문제는 꼭 코로나19와 관련이 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상정돼 있던 그런 숙제 중의 하나라고 보아집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 마치 플랫폼 업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비대면 진료로 인해서 플랫폼 업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마치 제도를 설계한 것처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이용하신 국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1300만이 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과정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비대면 조제 및 약 배달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창고형 배달 전문 약국이 등장했고 중개플랫폼 난립이 있었고 중개플랫폼에 의한 약국에 대한 우월적 지

위 남용으로 처방 솔림이 가중화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약국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졌는데 이런 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최종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그건 법령 해석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세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오던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2월 22일 판결 전에는 그 전의 판결을 감안해서 저희가 입장을 냈던 거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또 직역 간의 대립이 엄청 심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는 이 판단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부나 국회가 사실은 눈치나 갈등을 보는 과정에 사법부에 의해서 변화되는 의료환경을 판단받게 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좀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되거나 또 진단기기가 발달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번에 한 판시 취지가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을 고려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 놓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 선임의 문제나 동일 성분 대체조제 등 이런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도 그런 전향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영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아까 김원이 위원이 약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호법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정춘숙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차관께서 간호인력종합대책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입법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민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제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에 발표를 했는데 이견 명백하게 국회에 대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때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조속히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린 겁니다. 입법권에 도전이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개인의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복지부가, 국회가 결정하고 이미 여러 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하듯이 복지부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복지부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이 위원님 질의 중에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원이 위원 예?

○서영석 위원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지금 2차관님이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김원이 위원 2차관님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신 거거든요. 공부는 하신 거예요? 간호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2차관님이 과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되는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위원들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는 좀 더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고 두 번째 질의에서는 시간을 맞춰 주십사 얘기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마이크 꺼진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되도록 짧게 요점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서 사실과 굉장히 다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호법과 관련해서 토론했고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지금의 여당 위원님도 계셔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曹明姬 위원 아니, 나갔다면, 다들.

○김원이 위원 아니요, 그때 최연숙 위원님이 자리에 계셨어요.

○위원장 정춘숙 계셨습니다.

○강기윤 위원 혼자만 남아 있었지.

○위원장 정춘숙 아니, 어쨌거나……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은 여당 위원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김원이 위원 그러면 야당……

○위원장 정춘숙 조용히 하세요, 다.

○김원이 위원 예.

○강기윤 위원 만장일치가 아니잖아.

○曹明姬 위원 만장일치는 아니지.

○김원이 위원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지요.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차관님, 사실과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말씀하세요.

○김원이 위원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사과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현 여당 위원님들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잘못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원이 위원 잘못 알고 있다고요. 최연숙 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曹明姬 위원 간호원 출신이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최연숙 위원님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여당 아니예요, 그러면?

○강기윤 위원 아니, 만장일치는 아니잖아요.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강기윤 위원 그 정도 해. 그 정도 하면 됐어.

○위원장 정춘숙 잠깐만요, 잠깐만.

○김원이 위원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전체회의로 넘어왔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뭐 맞을 수도 있고.

○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사실과 다른 얘기 하신 거 사과하십시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춘숙 아니 간사님,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말씀하시고 정리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제가 발언 중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또 칸막이

도 없으면서 마음껏 웃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도 마음이 편치 못한 우리 국민들이 계십니다, 웃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분들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원정책을 많이 강화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비교를 해 보자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 상한도 문 정부 3000에서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고요. 또 부검 후의 사인 불명 위로금도, 이의신청 기회도 문 정부 1회에서 2회로 올렸고요.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회의 때 500억 증액 요청해서 원래 책정됐던 276억에서 419억을 증액해서 69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청장님, 이 부분을 갖고 정부가 노력한 것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이 완전한 코로나의 극복 시기라는 마음으로 이 예산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원인 입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운영하고 향후 어떻게 꼼꼼하게 챙기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먼저 위원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다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보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 해 주셨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조건들을 더 많이, 사인불명 사망 중에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최대한 위로금 범위를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과성 관계있는 질환의 범주를 더 넓히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법 제정도, 이러한 지원 관련된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특별법 제정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 지원을 강화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청장님의 그런 발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함의적인 해석이 구체적인 결과로 꼭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고 조규홍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몇 %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4.49%입니다.

○서정숙 위원 4.99%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최근 5년의 평가는 ‘미흡’이었고 최근 1년의 평가는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의 원인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 운용 인력의 이탈과 질적 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우수인력을 영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운영 실적이 좋았을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 말씀해주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MZ세대하고 알파세대는 착실히 연금을 내고도 노인이 됐을 때 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말 발표에도 보면 5차 재정추계 시험계산 결과는 연기금이 기존 4차 재정추계 때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2055년 고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복지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전문 기금운용 인력들이 제대로 정주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저희 방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장관님, 국립중앙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외상센터가 중환자실 40병상에 총 100병상인데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본원에 최소 800~1000병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병원 운영자나 외상센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본원 520병상 결정은 그런 면에서 복지부나 기재부가 의료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한 거다, 탁상행정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주신 말씀을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십니다. 기재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사업비도 문제인데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병상당 사업비로 보면 2016년에 설립한 은평성모병원에 비해서 72% 그리고 송도세브란스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46.7%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 중앙병원을 세울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민간병원하고 수평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싼값에 적당히 짓고 그다음에 규모도 너무 작아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제 역할 못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규모도 충분하게 800병상 이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업비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다음, 상병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범사업이 12월 31일 날 종료되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6개 시범사업 지역 중에서 종로 지역의 신청과 수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마 거주 인구가 적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그 조건으로 하면 종로는 실제로 시범사업으로서 영향분석이나 평가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을 종료하면서 농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평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농어민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수정되고 나서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데 지금 특정 업종을 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취업자 기준은 건보 직장가입자, 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영업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은미 위원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다음은 보육 대체교사 문제인데요.

광주광역시청의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27일째 농성 중입니다. 복지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사전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교사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은미 위원 그런 면에서 뒷집만 지고 지켜볼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시다시피 대체 선생님들은 정규 선생님들이 휴가나 보수교육 등을 할 때 업무 공백을……

○강은미 위원 잠깐,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해고하고 재고용하고 해고하고 재고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광역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전에 방문 간호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서 지자체들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위 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체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을 1월 31일 날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잘 정리를 해주시고 발표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공정책수가라는 개념이 신설되었고요. 중증·응급 가산율, 중증 소아진료 보상 강화, 지역수가 도입, 여러 가지 수가들이 신설되는 걸로 보입니다. 죄다 재원들이 드는 부분인데요.

장관님, 그렇다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재원 마련과 예산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두 가지인데요.

건보는 일단은 낭비적인 요소를 막아 가지고 필수의료 쪽으로 돌리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재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투자되는 필수의료 재원의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로 예산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추정해놓은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시범사업 같은 걸 하면서 좀 구체화하면서 재원 대책이 나올 텐데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시범사업만 하다가 결국에는 남발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지금 발표한 계획들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숫자로 제시를 하면서 의료계와 잘 신뢰를 형성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의사 정원 문제가 이제 의정협의체 시작되면서 국민 관심사로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1년에 적절한 의사 배출,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35년에는 현행대로 하면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자료를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한 4000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신현영 위원 3500명, 뭐 이런 구체적인 숫자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신현영 위원 실제로 정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희의 고민은 배출되는 의사들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기전을 사전에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역의 인프라 강화라든지 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이 없으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진료과목 간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예,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들에 대한 자부심도 높여 주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2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장관님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요. 이런 필수医료를 하는 전공의들, 국가가 조금 더 수련비용 지원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우선 배치는 필수의료하고 지방병원에 먼저 배치한다고 말씀드렸고 소아심장·외상·감염 등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얘기를 경청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지금 외상·소아심장·감염에 대한 수련비용 지원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취약해서, 얼마나 증대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단계적으로 맞춰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장관님, ‘가치 기반 의료’라는 개념 들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 번 들어 봤는데 정확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고령화 시대에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의료기관에 환자 지표가 좋아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하다,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ACO모델이라는, 지역사회에서의 의원과 병원의 전달 시스템, 협업입니다.

이런 포괄적이고 통합적이고 자율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로써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환자도 만족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잘 분석해 가지고 시범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장관님께 산후조리원 집단감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10명이 넘는 신생아에게 호흡기 계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산후조리원이 감염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누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복지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인재근 위원** 매년 수백 건의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숨기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산후조리원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재 수준 적정성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재만 가지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유경 처장님께 복지시설 급식 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는 19년도부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참여는 자율적이어서 참여 시설 수가 적고 여전히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장애인 급식 전문인력이 없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연령과 만성질환 등에 따라서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영양사 배치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노인과 장애인분들에 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작년에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20곳을 운영했고 올해는 48곳을 더 추가해서 68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68개 센터에서는 1800개의 급식소를 관리하게 돼서…… 이 1800개소라는 것은 지금 노인·장애인 급식소의 2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국 시군구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의무화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지금 노인·장애인의 위생관리 그다음에 맞춤형 식단 제공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노인·장애인의 식단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인재근 위원** 다음에는 지영미 청장님께 중국발 입국자 검역 허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관련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하면 허

점이 보입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고 독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고 출국한 사람도 60여 명이 넘는다고 파악됐습니다. 외교 문제까지 불거진 방역 대책치고는 꼼꼼함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방역 강화 초기에 저희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만 하루 정도 정보가 지자체에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그것 보완을 해서 지금은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항에서 다 검사를 하지만 장기나 내국인의 경우에는 일단 거주지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현재 한 99.5%까지 검사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100%에 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준비시간이 길었으면 저희가 이런 시스템 오류가 안 생겼을 텐데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초반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춘숙 지금 산후조리원을 지자체가 관리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기른다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지금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내용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내용 다 파악하고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 정춘숙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장관님께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지난번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소아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아주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지적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이나 또 소아응급진료 기능 담당하는 병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 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지원안이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데 만일에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책임성만 강화한다는 것은 일선의 어려움만 과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대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력 충원 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나 분만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의료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이번에 1차 필수대책에 제일 우선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우선은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위원 어쨌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진료 기능 강화하는 데 인력 수급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이 지금 30%, 20%대로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시 양성하더라도

여러 해가 걸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최재형 위원 실제 현장에서 그게 반영되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적인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나 응급 전담 전문의의 고용 지원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흉부외과나 외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비용 지원이 소청과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자립준비청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립준비청년들의 위기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소년원으로 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후에 소년원에서 출소할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자립지원수당이나 자립지원정착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개선 대책이 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이 소년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호를 일괄 종료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18세 전에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종료하지 않고 보호조치 연장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사실 자립수당이나 정착지원금 지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 외에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

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단순히 우리가 수당을 줬다, 정착지원금 지원해 줬다는 것만 가지고서 정부가 다 했다는 생각을 좀 지양하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자립준비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의견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게 심리지원이더라고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춘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혜숙 위원 건보재정 5년 일몰 연장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법으로 만드세요. 일몰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서 일몰 때까지 유예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법으로 자연스럽게 지원이 되어야지 항상 일몰로 넣어두는 건 맞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소위 때 5년 연장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법으로 만들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법으로 만들자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없애자는 말씀이십니까?

○전혜숙 위원 유예기간을,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몰 기한을 지나면 이 법이 발효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셔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국고지원 조항

이니까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전혜숙 위원 장관님이 기재부 출신이어서 그 이점 때문에 제가 장관 청문회 때 그 질문을 했고 본인도 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기재부가 1년 하겠다는 걸 저희가 이제 5년으로 연장을 했고……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년 뒤부터는 법이 발효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국고지원은 확실하게 잡아두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근데 일단은……

○전혜숙 위원 갑자기 청문회 때하고 태도가 달라지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일단은 지금 법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빨리 5년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건보 구조개혁과 연계해 가지고 또……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언제까지 일몰로만 할 겁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는 답을 했어요. 약속 지키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열심히 재정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지역의 장애인 행사에 가면, 제가 지난번 질의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65세 이후에 장애를 입으면 활동보조사 지원이 안 돼요. 65세 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65세가 넘어도 활동보조사 지원을 받는다 이러 하니까 ‘잘 모른다, 가서 확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파악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공부하는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전혜숙 위원 상임위에서 답변하고는 그 뒤에 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

○전혜숙 위원 차관님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분들 봐라, 진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요즘 열심히 5개년 계획 지금 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혜숙 위원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최혜영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거 평

장히 심각하게 이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설명한 걸 또 다시 말씀드리면 65세 이하의 장애인 숫자보다 65세 이후의 장애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65세 이전의 장애인들이 2021년 경우만 해도 3만 9055명인데 65세 이상이 돼서 장애인 된 사람이 4만 7900명이예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사로부터 받는 것과 요양보호사로부터 받는 것은…… 바깥 활동을 할 때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아픈데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으면 감옥 아닙니까? 이것은 장애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아마 검토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검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차관도 모르고 장관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 다음번에 꼭 그런 답변 안 하도록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혜숙 위원 질병관리청장님, 우리가 백신 그 때…… 항체 양성률 조사라든가 접종 효과 분석을 해서 다음 백신을 개발할 때 도움 되라고 제가 그때 40억을 질병관리청 연구하는 데 얘기를 해서 썼어요. 그 데이터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까? 그때 자료를 내라니까 제대로 자료를 못 내던데.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자료는 저희가 작년에 두 번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1월 달에 했고요. 올해 중에 또 분기마다 해서 네 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7억 잡혀 있어서 그거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3000만 명 확진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백신 접종과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다, 재감염률 그런 걸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전혜숙 위원 잠깐만 1분……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차접종한 부분이나 1차, 2차, 5차에 했을 경우 이런 항체 조사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백신 구입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하고 백신 잔여량 그리고 백신을 폐기한 양 그리고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백신 폐기가 지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되고……

○**전혜숙 위원** 어쩔 수 없이 된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래서 대책이 사실은 공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전혜숙 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폐기?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폐기된 것은 지금 1250만 도즈 정도 되고요. 공여가 한 930만 도즈 정도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유효기간은?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4400만 도즈 정도 되고 올해 들어올 곳이 지금 1500만 도즈 정도 2개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늦게 받아 가지고 유효기간이 좀 긴 백신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코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WHO 승인을 받으면 공여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장관님과 우리 질병관리청장님, 우리 의료 종사자들 격리기간이 다르고 했던 부분은 2022년 4월부터인데요. 이 부분 좀 챙겨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한 부분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지고요 현장에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난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병상 수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나 의료인력은 또 병상에 비해서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 대책을 보시면 병상이 2013년에서 22년까지 10년간 9만 4000병상이나 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필수의료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도 지금 병상을 계속 늘려달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병상이 10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의료인력은 의사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병상만 늘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정원이 17년째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예측된 문제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생길리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예측된 것을 복지부에서 정책을 짜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0조에 보면요 5년마다 병상 기본시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적 있습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꼭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필수요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역적 의료 불균형 문제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가지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방향은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 재난심리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범정부 총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행안부에서도 재난심리센터를 운영하고요 복지부에서도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 센터가 17개 시도의 적십자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어디 소속입니까? 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는 4개의 권역별로 지금 국립정신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인력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이원화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재난심리지원의 문제점은 재난심리지원 컨트롤타워의 이원화에서 온다’라고 최윤경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의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업무를 조금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재해구호법에 따라 가지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이태원의 경우에는 저희 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보다 복지부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자립정보 제공시스템인 자립정보 ON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최근에 이 앱에 올라온 정보를 보시면 22년 8월 2일이 최근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립수당 이요 23년 1월 1일에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자립정착금도 2023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월 1일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앱을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도 17개 시도에 개설했는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보열람 권한도 이분들한테, 전담인력한테 줬어요. 그러나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느린 행정인 거예요.

이 부분도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지고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

도록 꼭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건 진짜 문제네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지난달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번 성남 모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망 케이스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각종 공과금을 성실하게 계속 납부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과금 연체 이게 위기가구로 판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인데 그게 아예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작동되는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상으로는 이러한 모녀, 이러한 케이스들은 포착해 내지 못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허점일 텐데요. 행정편의적인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여러 차례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어떠냐? 정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 활용에 좀 더 힘을 많이 써 왔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과로 이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위기가구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2018년에 3만 6000명에서 작년에는 120만 명으로 227%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하는 데이터의 수준을 고도화하니까 당연히 촘촘하게 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늘어난 위기가구만큼 그러면 현장에서 이들을 추적하고 서비스로 연계가 되고 있는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컴퓨터 스크린에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거 못 받아서 사망하는 경우는 계속 그

대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서비스로 연계할 복지 전담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위기가구 수 평균, 얼마나 되는지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95건……

○강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명이 95건이네요. 2018년에는 45건이었거든요. 2배 넘게 늘거예요. 지원이나 이런 게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1명당 담당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또 다른 복지 업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면서 늘어난 위기가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복지 공무원 업무 과부하 문제는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위기가구 발굴 대책에는 이 인력, 복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장관님, 지금의 현장 복지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말까지 보사연을 통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복지 담당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안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정보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어려우신 분들이 끝까지 이용하는 서비스가 금융서비스하고 의료서비스더라고요. 그 관련 정보를 더 넣고, 그리고 아무리 지자체의 인원을 확대한다 그래도 공공 부문 혼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분들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과의 협력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발로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오늘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하는 씨실과 날실은 결국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생활고 견디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겠지요. 그러려면 복지 문턱 낮추고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충분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안을 마련할 의향 있으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실태조사가 나왔으니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관련 부처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한 군데가 기재부지요.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과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장관께서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적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니까 아마 행안부가 더 그거 할 것 같은데 행안부, 기재부 다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소년 강제수용소 관련한 선감학원 사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피해 아동이 4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추산됐는데요 참가습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진실·화해위원회지요, 여기에서 나온 권고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여기 권고안 내용 보시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 회복 조치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결정문을 보면 해당 부처장은 공식 사과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금 현재 사과에 대한 입장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진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시행했던 양육 상황

점검을…… 세상에, 이걸 권고 이행 현황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눈속임인 거지요.

그리고 또 권고안 내용 보면 트라우마 연구·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오늘 회의를 빌려서, 우리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 그리고 또 과거사의 책임 있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려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어떻게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위원장이 권고의 처리 방향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장관님 스타일이 아니신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볼게요. 진화위 출범 이후에 권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혜영 위원 없으시면서 지금 이 권고 논의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열린 적 없고요. 또 권고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래도 그건……

○최혜영 위원 거쳐야지만 이행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반드시 필수 절차는 아닌데……

○최혜영 위원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 규정을 해놓은 것은 거기서 충분히 심의를 해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 최종 권고는 부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것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심의위원회를 핑계로 지금 권고 이행을 미루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이 같은 걸 같이 권고를 받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미 도지사님께서 공식 사과 하셨

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지급, 의료서비스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중앙부처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련 사항을 좀 더 스테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다 검토하시고요. 다음 회의 전까지 공식 사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작성을 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우리가 지금 난방비 급등 관련해서 국민들의 많은 심려가 있어서 저도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복지부와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산업부랑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감면정보……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가 수혜 대상자까지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대상자 선정까지 해서 그걸 어디다가…… 산업부에다가 보내 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감면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이런 게 다 관리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까도 최종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단 지자체에 드러 가지고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라는 게 하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 5월 전에는 그 시스템을 정비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쉬운 겁니다. 산업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 행복이음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치를 해 보면 서비스를 못 받은 대상이 딱 나옵니다. 쉬운 거라서 이것을……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옛날, 2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건 바로 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갖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줄 수 있도록 같이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장관님, 오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니 필수의료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소아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아까 지역수가, 공공정책수가 도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가를 인상해서 우수한 인재를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렇게 수가 정책으로 의료인력을 유인한다는 것이 오래된 정책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종성 위원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여러 가지 수가 가산제가 도입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례로 외과, 흉부외과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2009년도부터 흉부외과 100%, 외과 30% 이렇게 가산제를 실시했는데 최근 5년,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94억 원, 총 5470억 원이 지출됐지만 그래프에 보시면 의료인력 충원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돼서 2022년에는 66.8%로 외과 충원율이 떨어지고 흉부외과는 34.8%로, 거의 폭락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과연 수가 개선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충분조건이나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가만 단지 올릴 게 아니라 정말 현장의 실질적인 욕구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안들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대책에 넣었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의대생을 비롯해서 장차 의료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든가 욕구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최근 MZ세대들, 워라벨을 중시하는 그런 MZ세대들의 직업관을 반영하는 응급의료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좀 더 검토되고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방안이 없어 보여요. 결국은 이번 계획에서도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지금 복지부에서 자체적인 복안을 마련해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전체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증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대안도 없이 의료계하고 의정협의체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의료계의 주장에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 자체 내에서라도 어떤 정책 수요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 필수의료 강화의 완성은 결국은 재활의료로 귀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수의료 급성기 환자가 생명을 구해서 또 회복기로 접어들고 그다음에 건강을 되찾아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종성 위원 최근에 이기일 1차관님께서 일본 재활의료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맞이한 일본의 경우처럼 보험수가를 다양하게 도입을 하고 기능이 다른 병원 간 급성기·회복기의 어떤 연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조규홍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과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는 연금특위가 마련이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들에 나오는 걸 보면. 나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구조개혁 부분은 정부에서 뭔가 안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정부의 서포트가,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2021년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 협의체를 꾸려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재부 금융위까지 해서, 결국은 노후소득이라고 하는 게 다층적으로 구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 왔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2021년 9월 이후로는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하고, 모아져서 방향성이 만들어진 것이 국회 연금 특위에 제안도 되고 제시가 되어야지만 연금 체계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국민연금 또는 노후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담당 과장 정도 와 가지고 기재부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인원들도 파견을 하고 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 피드백하고 또 서포트를 해 주시고 해서 국회 연금특위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이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1월 말에 나왔는데요 70년간 재정추계 시산을 하셨더라고요. 2093년까지의 재정추계 시산을 했는데 그냥 2100년까지 하시지 그러셨냐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통 70년 그렇게 하고요. 이게 장기로 하는 게 관례고 그렇게 돼 있

습니다.

○**한정애 위원** 관례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93년 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가 얼마나 될까 빨리 돌아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때의, 2093년의 재정이나 규모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한데 너무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2020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사실 40년 회계연도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하되 5년마다 장기 재정추계를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말까지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재정추계 결과를 하시는 데 가능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걸 해 주시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거기를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약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공동법안이기도 합니다.

저희 국정감사 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요. 김민석 위원님 또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증상 관련해서 품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의약품들, 우리가 해열 진통제 또는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 약가를 올려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전히 품질·품귀 현상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한. 지속되고 있어서,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지사제니 무슨 변비약이니 멀미약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하게 약가 인상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FDA는 품질 약을, 그러니까 품귀 현상을 보이는 약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디지털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돌아가고 있고 한데 가능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FDA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의약품 품질종합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그 케이스를……

○한정애 위원 그래서 품질의 현상이 보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차라리 성분명으로 처방, 조제를 하라든지 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품질약 처방이 되풀이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는 현장 목소리 때문에 이미 2020년부터 심평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회귀·필수의약품센터,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이렇게 해서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째 감기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뭘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약국에, 약국에, 약국에, 약국에, 또는 처방전을 바꿔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완벽하게 합의가 아니라 협의가 되는 지점 정도에서 사실은 정부 부처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달에 복지부, 식약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단체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가 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잘 결론을 내 주십사 하는 것,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정애 위원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냥 1분 정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25조 제2항,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의약분업을 할 때 지역 단위에서 의사들은 내가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들을 처방한다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공지를 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약사들은 ‘아, 이 약, 이 약, 이 약, 이 약을 구비해 놓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담은 것이 약사법 제25조제2항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혹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있느냐?’라고 자료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역의사회에서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약사들은 모든 약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은 폐기품이 생깁니다, 안 쓰이는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의약품들은, 약품들은 결국은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매립되건 또는 소각이 되건 말이지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에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에 의약분업을 할 때 우리의 디지털화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방전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 ‘아, 무슨 약들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안 지켜지고 있네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든 작동되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로 소비자는 조금 더 약품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불용약품이 최소화돼서 국가경제적으로도 낭비를 막고 의료비 축소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明姬 위원 장관님.

PPT, 국감 때 했던 PPT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500명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면 수도권이 48%, 의료

시설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국감 때 첫날부터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제주도·경북·세종, 3개 시·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데요. 저기 경북권에 5개 돼 있는 건 전부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굉장히 넓고 인구도 거의 270만이니까, 250만이 넘는데도 상급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장관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물이 있다고 그러던데, 인구 대비? 뭐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曹明姬 위원 1월 중순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구 기준도 있고 병상도 고려해야 되고 중중……

○曹明姬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저렇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좀 잘못됐고요. 제가 사는 동네 팔공산 밑에, 포항·경주·영천·경산, 저희 동네 동구읍에 상급종합병원이…… 거의 100만 인구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시설의 불균형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인, 우리 국내 전체의 종합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이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고 그게 지역적으로 편차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저희가 세우겠다고, 금년 중으로 세우겠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曹明姬 위원 너무 지역 불균형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과 연계돼 있는 지역에 대한 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의대 정원 하는 것, 우리 대구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요. 거의 반 이상이 전부 수도권의 수입이 좋은 미용,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개업하고 폐이닥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그때 장관님은 안 계셨지만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공청회 찬반을 할…… ‘왜 이렇게 하느냐? 기획연구를 확실하게

해라’. 기획연구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촘촘하게 해서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리든지 지역 따라서,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야지 그것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뭐 남원에 공공의대, 어디 어디 공공의대, 지역국립대학 있는 데 다 공공의대…… 지금 법이 몇 개나 올라와 있어요? 하다못해 서울시립대학도 자기도 공공의대 만들고 싶대요. 정치적으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민원받은 건데요.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지방보건법이 돼 있는데요. 저한테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40%밖에 의료인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들어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 선거 거들여 준 모 행정직, 의료인도 영입한다고 서류를 내면 그냥 자기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불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촌이나 산촌에서는 보건소장이 굉장히 큰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장을 의료인으로 안 하고 지역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자기 선거 거들여 준 행정직을 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의료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대책을 보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동형 병원 50억짜리, 이것 왜 운용이 안 됩니까? 이것 50억 들었는데 이동형 병원이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래서 세계일보에 '50억을 들인 이동형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 한번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코로나 때도 활용을 못 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잠깐만, 조금 1분만.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마무리 좀 해 주세요.

○曹明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보도자료로 나가 가지고, 뭔가 대책을 보내 주시고요. 그걸 못 보신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曹明姬 위원 한번 그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급종합병원, 그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협의 차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보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3차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3차 질의를 안 하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3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주세요.

(17시01분)

○위원장 정춘숙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148항부터 제154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046)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044)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54.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4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4항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된 지 오늘로 1년 11개월 21일이 경과되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년 7개월 2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회부된 간호법안(대안)도 8개월 23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운 위원님.

○강기운 위원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몇 차례 강훈식 간사와 회의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요.

어렵사리 지난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서 법사위에서 제2법안소위에 부의를 해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정점식 위원이 여야 합의로 2월 22일 날 법안소위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늦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그런 사안을 또 법사위에서 그렇게 소위를 하겠다고 여야 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 내용을 떠나서 국회의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간호법을 찬성하고 반대를 떠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우리 상임위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86조 3항에 있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에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렇게 국회법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제2법안소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2월 22일을 지켜보고 법사위에서도 또다시 진행이 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야당 간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 있었고 또 다시 그런 부분이 재현된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우리 보건복지위가 그래도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뤄 왔던 관례와 전통을 봐서라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위원회의 여야 위원들도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절차에 가 있는 것을 억지로 우리 위원회에

끌고 와서 이렇게 재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도 모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다수당인,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2주만 있으면 법사위가 한다 하니, 지금까지 인내해 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을 위시한 야당 위원님들, 정말로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야당의 문제고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루어 왔던 3년간의 그런 전통 또 합의에 의해서 해 왔던 이 부분이 오늘로써 깨지는 이런 안타까움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더 논의를 해서 22일까지 지켜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존경하는 강기운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여야와 상관없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생각해 주십시오.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률안은 7건입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기 전에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다른 전문직종의 예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질병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건보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행정쟁송 시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환

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법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아 돌보미 자격·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업무를 규정하고 중앙회·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간호법안은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지났습니다. 법사위에 간 이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만장일치 또는 합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 간사로서 법사위 회부 이후에 몇몇 단체들의 대표들에게 합의 처리를 좀 해 달라고, 법사위에 가서 합의 처리를 해 달라고 수개월간 요청해 왔습니다. 그 260일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뒤로는 짧게 9개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법사위에서 논의해 볼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합의 처리를 꾸준히 요청해 왔던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작년 7월 업무보고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법률안 현황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에서 저를 비롯한 김원이, 서영석, 김민석, 최연숙 위원들이 법사위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는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1월 16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는 커녕 2소위로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근거를 저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우

리 위원회에서 합의돼서 처리됐듯이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당 간사와 수차례 협의했고 합의하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쉽고 보건복지위의 위원으로서도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무기력해지지 않는 길은 이 법을 본회의로 올려서, 법사위 장기미처리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법안심사에 있어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의 정신을 살리고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을 법사위에도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두 분까지만 말씀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존경하는 두 분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국회법이 정한 각 상임위별로 그 권한이, 제가 방금 읽어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장기 미처리 법률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법사위에 간 상당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 건지, 저는 사실 전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것 정리한 게 전부라고 하는데 타 상임위는 또 얼마가 되며 21대 이전에 20대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86조에 보면 법사위의 권한이 규칙을 포함해서 법률안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권한이 있고 86조에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해서 법사위로부터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 법은 이 정도 있겠지만 타 상임위도 또 여러 개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86조 3항에 따르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가 있는지, 법사위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또 하나는 법사위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듣고 싶고 또 타 상임위는 어떻게 해 왔는지, 게다가 법사위가 일이 너무 넘쳐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상임위보다 법사위가 자주 상임위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에 대한 사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어 왔던 것인지,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일들이 있어 왔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닐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각 상임위를 존중하는 정신을 저는 그래도 국회가 여전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 법사위의 특별한 이유를 혹시 위원장님께서 들으셨다면 그걸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강기윤 간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22일에 2소위가 개의하기로 합의를 했다니까 최소한 그 날이라도 우리가 한번 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법대로 해서 우리 국회가 여지껏 다 했는지도, 저는 아닌 것을 솔하게 봐 왔습니다, 법대로 안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것만 꼭 집어서 말씀하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되고 그 전례를 우리는 깡그리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미 합의된 날짜가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날짜는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게 타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민석 위원님.

○김민석 위원 우선 국회법대로 하고 또 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두 분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법을 안 지켜서 지금 60일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법을 안 지킨 상태에서 22일로 며칠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법 위배 상황에서의 지연일 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법을 위배하는 바가 없습니다.

타 상임위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도 이미 저희가 법사위를 법 위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존중을 몇백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존중하실 존중감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의 존중감은 우리 스스로의 존중감을 낮추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과거 법사위가 뭐 어떻게 해 왔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을 겁니다, 그건 온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것은 시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을 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절차를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폭거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같이 상임위를 해 왔던 입장에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현재의 이런 폭거적인, 법을 위배하고 법사위가 벌이고 있는 방식을 합법적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폭거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이미 법률을 위배하고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이 상황에서 하는 것을 또 며칠 늦추겠다고 하는 것을 잔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잔피에 굳이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2일까지 기다려 주면 어쩌냐 그런 말씀을 저도 아까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러면 법사위가 22일까지 기다려 주면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것 못 할 바도 없지 않겠나라는 개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법사위는 아마 이번에 처리하고 나면 간호법 등을 포함한 다른 법들의 처리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가 저런 식의 작태를 계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법사위의 월권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사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면, 처리를 하면 그냥 그동안에 위반한 것은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어차피 그렇게 안 할 것인데 뭐 하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사위가 첫 번째로는 국회법을 위배했고, 두 번째로는 잔피를 부렸고, 세 번째로는 동료 위원과 동료 상임위를 능멸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사위의 최소한의 권위를 유지해 주려는 저희들의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현재 여당에 속해 있는 위원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애

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맞고요.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내용을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한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유 그대로 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료 위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 법사위의 활동을 앞으로 잘되도록 하는 우리의 선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법사위에서 이것을 지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아, 이것 복지위가 가져가서 도리 없었다’라고 그나마 정치적 명분을 드리는 그런 저희의 배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공문을 보냈고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니 ‘공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야 위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인터뷰를 해 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은 복지위 안의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법들은 1법안소위, 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그때 여기 다 소속되어 계셨지요. 강기윤 간사님께서서는 1법안소위, 2법안소위 다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대부분 다 만장일치로 했고 간호법만 부분적으로 또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법사위에 보낸 것은 당연히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러니까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2소위로 보내 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간사를 통해서 우리 법이 처리되도록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 또다시 복지위가 복지 관련 법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복지위 안의 위원님들이 서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 자체,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간사님께 협의를 요청드렸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서로 좀 의견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정춘숙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4항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까지, 이상 7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므로 이 안건들에 대해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기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강기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한 번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1분 내로 마쳐 주십시오.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오후 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 말씀하십시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오셔서 참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 위원장님이 그동안 해 왔던 모습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자리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종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아까 김민석 위원장님 모든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법사위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철폐를 맞아야 되고 그동안 상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1분만 더……

○위원장 정춘숙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김민석 위원 그만하자고요.

○위원장 정춘숙 그만하십시오.

○강기윤 위원 이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마무리 그냥 하십시오.

○강기윤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강기윤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너무 시간에 인색하시네. 제가 별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참……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을, 법사위의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가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 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큰 부담이 없을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간사 합의를 해서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강기윤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曹明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 1분만.

○위원장 정춘숙 아니요, 됐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서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선우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측에 두 곳이 설치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비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훈식 간사님부터 다섯 분씩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투표하시면 됩니다.

(17시48분 투표개시)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4매입니다.

다음으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모두 24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4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사일정 제14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사일정 제150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사일정 제15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사일정 제15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사일정 제15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사일정 제154항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투표수 24표 중 가 16표, 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하나 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15분)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15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55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

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사유로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실제 고발한 바 있으나 백경란 증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백경란 증인에 대한 고발 철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춘숙 위원, 조명희 위원님, 최연숙 위원, 최영희 위원, 최중윤 위원, 최혜영 위원님, 한정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은 가고 안 계시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 기 윤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영 인	김 미 애	김 민 석	김 원 이
남 인 순	백 종 현	서 영 석	서 정 숙
신 현 영	이 종 성	인 재 근	전 혜 숙
정 춘 숙	조 명 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중 윤	최 혜 영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선	희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정	경	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조	규	홍
제 1 차 관		이	기	일
제 2 차 관		박	민	수
기획조정실장		김	현	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전	병	왕
인구정책실장		최	종	균
보건의료정책실장		임	인	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장	오	유	경
차	장	권	오	상
기획조정관		김	유	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서	경	원
질병관리청				
청	장	지	영	미
차	장	김	현	준
기획조정관		양	동	교

【보고사항】

○의안 회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인재근·고영인·김상훈·김성환·김영진·박상혁·서영교·서영석·소병훈·양경숙·최종윤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한정애·이동주·최강욱·장철민·강준현·김상희·강선우·이원욱·윤미향·민홍철·김영주·강훈식·강병원·윤영찬·서영교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인재근·김영진·윤영덕·김민기·서영석·소병훈·최종윤·허영·박상혁·김성환·양경숙·남인순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인재근·김영진·윤영덕·김민기·서영석·소병훈·최종윤·허영·박상혁·김성환·남인순 의원 발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강기윤·박성중·최영희·박성민·김선교·최재형·윤영석·조명희·이종성·윤상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9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백혜련·이형석·박상혁·강준현·이원욱·임호선·강훈식·이정문·전용기·김영진 의원 발의)

12월 12일 회부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최혜영·강준현·강훈식·권인숙·김민철·김상희·김영배·김영주·이정문·장철민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최혜영·박주민·김태년·양향자·인재근·정태호·고영인·박수영·이탄희·김용민·김홍걸·하태경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이종성·권명호·김예지·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용·전봉민·전주혜·조명희·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3일 회부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김홍걸·강민정·김병기·김병주·김승남·김의겸·안호영·위성곤·윤재갑·윤준병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홍석준·김석기·김영선·김용관·김태호·박덕흠·서일준·이현승·조경태·지성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최종윤·한준호·조승래·김태년·이인영·조오섭·김의겸·윤건영·한정애·정일영·김승남·정태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4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4. 한정애·정성호·장철민·문진석·이원욱·윤미향·윤후덕·민홍철·이성만·최종윤·김병기·양향자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4. 조은희·김영선·박정하·서일준·

성일중 · 윤재옥 · 전주혜 · 정운천 · 하태경 ·
한무경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4. 서영석 · 고민정 · 김교홍 · 김병욱 ·
김성주 · 문진석 · 서영교 · 인재근 · 조승래 ·
최종윤 · 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민형배 · 강민정 · 고민정 · 김병욱 ·
김영배 · 김용민 · 박상혁 · 신정훈 · 양정숙 ·
윤준병 · 윤후덕 · 이용선 · 장경태 · 홍정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민형배 · 강민정 · 고민정 · 김병욱 ·
김영배 · 김용민 · 박상혁 · 신정훈 · 양정숙 ·
윤준병 · 윤후덕 · 이용선 · 장경태 · 홍정민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민형배 · 강민정 · 홍정민 · 고민정 ·
박상혁 · 신정훈 · 김용민 · 윤후덕 · 장경태 ·
김병욱 · 윤준병 · 이용선 · 양정숙 · 김영배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백종현 · 박석민 · 이채익 · 정운천 ·
이종성 · 정동만 · 최춘식 · 서정숙 · 이현승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6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9. 정춘숙 · 권칠승 · 김민석 · 김성주 ·
김영주 · 김윤덕 · 용혜인 · 최종윤 · 최혜영 ·
허종식 의원 발의)

12월 20일 회부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서정숙 · 임병헌 · 최승재 · 백종현 ·
양금희 · 조은희 · 신원식 · 이종성 · 김웅 ·
박대출 · 윤주경 · 강대식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남인순 · 김상희 · 김종민 · 김태년 ·
김홍걸 · 민형배 · 박찬대 · 인재근 · 정태호 ·
최종윤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인재근 · 김승남 · 김홍걸 · 서영석 ·
소병훈 · 최종윤 · 최혜영 · 김상희 · 양정숙 ·
송옥주 · 고영인 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22. 12. 20. 권인숙 · 김상희 · 김용민 · 서동용 ·
유정주 · 이원옥 · 정춘숙 · 최혜영 · 한정애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1일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1. 신동근 · 고용진 · 김윤덕 · 김주영 ·
김태년 · 김홍걸 · 위성곤 · 이상현 · 한병도 ·
홍성국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1. 정춘숙 · 김민석 · 김상희 · 김성주 ·
김영진 · 김윤덕 · 김정호 · 남인순 · 최혜영 ·
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2. 김상훈 · 김선교 · 박덕흠 · 박성민 ·
송언석 · 이명수 · 이종성 · 임병헌 · 정우택 ·
태영호 의원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2. 김홍걸 · 강민정 · 김병주 · 민형배 ·
안호영 · 양정숙 · 오영환 · 위성곤 · 윤재갑 ·
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3일 회부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안철수 · 조수진 · 박덕흠 · 홍석준 ·
조은희 · 이현승 · 백종현 · 배준영 · 서일준 ·
이채익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조명희 · 김미애 · 박대수 · 백종현 ·
서정숙 · 이종성 · 임병헌 · 최연숙 · 하영제 ·
홍석준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한정애 · 한준호 · 장철민 · 송옥주 ·
이용우 · 이원옥 · 양향자 · 김영주 · 이성만 ·
이수진 · 김정호 · 김상희 의원 발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한정애 · 남인순 · 박홍근 · 이원욱 · 김정호 · 송옥주 · 장철민 · 양향자 · 이성만 · 김상희 · 이용우 · 김영주 · 이현승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한정애 · 한준호 · 장철민 · 송옥주 · 이용우 · 이원욱 · 양향자 · 김영주 · 이성만 · 이수진 · 김정호 · 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6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강득구 · 고영인 · 권인숙 · 김민석 · 김민철 · 김수홍 · 김승남 · 김영호 · 김철민 · 김태년 · 민병덕 · 민형배 · 신정훈 · 안민석 · 윤영덕 · 이성만 · 이용빈 · 이원욱 · 이탄희 · 임오경 · 정일영 · 정태호 · 최강욱 · 최혜영 · 한병도 · 홍기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소병훈 · 강민정 · 김두관 · 김남국 · 김민석 · 김주영 · 남인순 · 양정숙 · 양향자 · 인재근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정춘숙 · 강득구 · 강훈식 · 권칠승 · 김영주 · 김윤덕 · 김정호 · 윤후덕 · 최혜영 · 허종식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정춘숙 · 강득구 · 강훈식 · 권칠승 · 김윤덕 · 김정호 · 용혜인 · 윤후덕 · 최혜영 · 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9일 회부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백종현 · 최춘식 · 유경준 · 정운천 · 황보승희 · 강기윤 · 박덕흠 · 김학용 · 하영제 · 장동혁 의원 발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이종성 · 김예지 · 권명호 · 박형수 · 서정숙 · 유상범 · 이채익 · 전봉민 · 전주혜 · 정운천 · 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8일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이태규 · 김석기 · 김선교 · 김예지 · 박덕흠 · 서병수 · 이명수 · 정경희 · 최연숙 · 홍석준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전봉민 · 김승수 · 김용환 · 김태호 · 서일준 · 송언석 · 이종성 · 정우택 · 정운천 · 정진석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8. 정부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서영석 · 고민정 · 김병욱 · 김상희 · 문진석 · 이동주 · 이용빈 · 인재근 · 조승래 · 최종윤 · 최혜영 의원 발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김정재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희곤 · 박대수 · 서일준 · 이종배 · 정동만 · 정운천 · 이현승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9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강기윤 · 김상훈 · 김희곤 · 최춘식 · 박형수 · 김승수 · 서병수 · 서범수 · 김용환 · 이종배 의원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강기윤 · 장동혁 · 조명희 · 이종성 · 서병수 · 김선교 · 이주환 · 서범수 · 김용환 · 최재형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김상희 · 강득구 · 강준현 · 김민석 · 서영교 · 서영석 · 이상민 · 이은주 · 정태호 · 최종윤 · 한정애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주호영 · 구자근 · 김도읍 · 김상훈 · 류성걸 · 유의동 · 임이자 · 장동혁 · 정희용 · 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3년 1월 2일 회부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이종성 · 김성원 · 박대수 · 박덕흠 · 박성민 · 백종현 · 서병수 · 성일종 · 이채익 · 임이자 · 조명희 · 전봉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안규백 · 김수홍 · 김홍걸 · 도종환 · 양향자 · 유정주 · 이개호 · 인재근 · 조명희 · 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4일 회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1. 5. 김예지 · 김선교 · 김영식 · 김웅 · 서일준 · 유정준 · 윤두현 · 이명수 · 이태규 · 지성호 의원 발의)

1월 6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김영주 · 강득구 · 고영인 · 김민석 · 김정호 · 김종민 · 김태년 · 이수진(비) · 이원욱 · 임호선 · 정태호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서영석 · 강선우 · 고민정 · 김병욱 · 김상희 · 김태년 · 문진석 · 설훈 · 우원식 · 이성만 · 이용빈 · 인재근 · 최혜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서영석 · 강선우 · 김병욱 · 김상희 · 김태년 · 문진석 · 설훈 · 우원식 · 이성만 · 이용빈 · 인재근 · 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9일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 10. 김미애 · 金炳旭 · 박수영 · 송언석 · 양금희 · 이종성 · 이채익 · 이태규 · 이현승 · 정우택 · 조명희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3. 1. 10. 황운하 · 김병기 · 김상희 · 김성주 · 임종성 · 정태호 · 김용민 · 김의겸 · 고영인 · 김두관 · 최종윤 · 김정호 · 장경태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 10. 최승재 · 노용호 · 박덕흠 · 서정숙 · 이종배 · 이종성 · 이태규 · 최연숙 · 최영희 · 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1일 회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1. 한병도 · 양정숙 · 강민정 · 박광운 · 김주영 · 강득구 · 김영배 · 이용빈 · 김성주 · 김민철 · 안호영 의원 발의)

1월 12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민형배 · 양정숙 · 박상혁 · 이용빈 · 도종환 · 강득구 · 황운하 · 최종윤 · 문정복 · 김성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김민석 · 홍정민 · 조정훈 · 신정훈 · 정춘숙 · 김성주 · 김희곤 · 신동근 · 양경숙 · 이용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1. 13. 강득구 · 강민정 · 권은희 · 권인숙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욱 · 김병주 · 김승남 · 김승원 · 김종민 · 김철민 · 민병덕 · 민형배 · 박완주 · 서영석 · 소병훈 · 신정훈 · 이병훈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원욱 · 이해식 · 정춘숙 · 최강욱 · 최종윤 · 최혜영 · 홍기원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 13. 최연숙 · 권은희 · 김용판 · 양향자 · 윤두현 · 정경희 · 조명희 · 조정훈 · 최승재 · 최형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3. 인재근 · 소병훈 · 김홍걸 · 최혜영 · 김상희 · 김영진 · 김의겸 · 고영인 · 최종윤 · 김민기 · 이인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 16. 김미애 · 권명호 · 金炳旭 · 박수영 · 송언석 · 이종성 · 이채익 · 이현승 · 정우택 · 조명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 16. 최혜영 · 강득구 · 강준현 · 권인숙 · 기동민 · 김민석 · 김민철 · 김성주 · 김원이 · 이수진(비) · 이은주 · 인재근 · 정춘숙 · 홍성국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1. 16. 윤후덕 · 정성호 · 김주영 · 송갑석 ·

김경협 · 설훈 · 홍기원 · 김철민 · 김정호 · 박상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7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백종현 · 최춘식 · 이종성 · 정운천 · 정동만 · 장동혁 · 권명호 · 이주환 · 이현승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최연숙 · 金炳旭 · 이인선 · 이태규 · 윤두현 · 최승재 · 윤주경 · 전주혜 · 권은희 · 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8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김원이 · 기동민 · 박상혁 · 서영석 · 송갑석 · 신정훈 · 어기구 · 우원식 · 조오섭 · 최혜영 · 홍성국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김원이 · 기동민 · 박상혁 · 서영석 · 송갑석 · 신정훈 · 어기구 · 우원식 · 조오섭 · 최혜영 · 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8. 강대식 · 金炳旭 · 김용환 · 박대수 · 박덕흠 · 양정숙 · 유경준 · 유의동 · 정동만 · 하영제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김원이 · 기동민 · 박상혁 · 서영석 · 송갑석 · 신정훈 · 어기구 · 조오섭 · 최혜영 · 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19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김민석 · 강득구 · 강민정 · 고영인 · 김두관 · 김희곤 · 신동근 · 신정훈 · 조정훈 · 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9. 김민석 · 조정훈 · 신정훈 · 이상현 · 권칠승 · 김영주 · 정춘숙 · 도종환 · 홍정민 · 김희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0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3. 1. 20. 강선우 · 강준현 · 김승남 · 임종성 ·

정태호 · 조승래 · 최종윤 · 한정애 · 허영 · 홍정민 의원 발의)

1월 25일 회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

(2023. 1. 26. 이종성 · 박대수 · 김성원 · 백종현 · 성일종 · 조명희 · 전봉민 · 박덕흠 · 임이자 · 박성민 · 최혜영 의원 발의)

1월 27일 회부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박대출 · 김학용 · 이태규 · 김승수 · 김미애 · 조명희 · 최연숙 · 배준영 · 배현진 · 김예지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김학용 · 김용환 · 구자근 · 최영희 · 태영호 · 정운천 · 김정재 · 金炳旭 · 최춘식 · 류성걸 · 김태호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한정애 · 서영교 · 장철민 · 문진석 · 강선우 · 윤미향 · 민홍철 · 이수진(비) · 윤영찬 · 이용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한정애 · 서영교 · 이수진(비) · 강선우 · 윤미향 · 장철민 · 민홍철 · 윤영찬 · 이용우 · 문진석 · 유의동 · 임종성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강기윤 · 박형수 · 서병수 · 서범수 · 김용환 · 구자근 · 임병헌 · 윤영석 · 조명희 · 최춘식 의원 발의)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최영희 · 구자근 · 김성원 · 김희국 · 정운천 · 김학용 · 태영호 · 황보승희 · 이채익 · 하영제 · 박대수 · 이용호 · 이용 · 최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일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최연숙 · 박대출 · 임병헌 · 김석기 · 윤두현 · 최승재 · 장동혁 · 정우택 · 최영희 · 조명희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2. 1. 정부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최연숙 · 김상훈 · 김석기 · 박대출 · 이태규 · 조명희 · 최영희 · 이인선 · 장동혁 · 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최재형 · 구자근 · 김성원 · 김용판 · 노용호 · 박대수 · 안철수 · 정경희 · 하영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최영희 · 구자근 · 김상훈 · 김성원 · 이현승 · 이용 · 김승수 · 정희용 · 권명호 · 서일준 · 임이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조명희 · 박대출 · 박형수 · 박덕흠 · 양금희 · 최춘식 · 김영선 · 이종성 · 최영희 · 윤영석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강기윤 · 김용판 · 구자근 · 조은희 · 임병헌 · 김석기 · 서범수 · 조명희 · 박형수 · 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3일 회부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강기윤 · 윤상현 · 윤영석 · 김선교 · 최춘식 · 임병헌 · 서범수 · 조은희 · 박성중 · 이채익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남인순 · 정태호 · 최혜영 · 최종윤 · 인재근 · 강준현 · 전재수 · 이성만 · 김영호 · 민형배 · 송옥주 · 홍성국 · 정성호 · 김민석 · 김철민 · 강선우 · 허종식 · 김용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3. 2. 7. 박진 · 서일준 · 지성호 · 하영제 · 엄태영 · 김선교 · 임이자 · 김희곤 · 한무경 · 김상훈 · 유경준 · 박덕흠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2. 7. 김미애 · 金炳旭 · 이현승 · 양금희 · 지성호 · 이채익 · 한무경 · 성일종 · 정경희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임호선 · 황운하 · 이수진 · 강병원 · 이정문 · 이학영 · 이성만 · 고영인 · 권철승 · 양정숙 의원 발의)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피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송갑석 · 민형배 · 양향자 · 정성호 · 이용빈 · 이형석 · 강득구 · 설훈 · 윤호중 · 조오섭 · 이병훈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이종성 · 김예지 · 권명호 · 박형수 · 서정숙 · 유상범 · 전봉민 · 전주혜 · 정운천 · 하태경 의원 발의)

1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정우택 · 박덕흠 · 이명수 · 윤창현 · 최승재 · 이종성 · 최영희 · 조수진 · 서정숙 · 허은아 · 김형동 · 엄태영 · 이종배 · 이장섭 · 지성호 · 김학용 · 도종환 · 변재일 · 김기현 · 윤주경 · 조은희 · 임호선 · 안철수 · 최춘식 · 이성만 · 김용판 · 박성민 · 권은희 의원 발의)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홍정민 · 강득구 · 김경협 · 김민석 · 김병욱 · 김영주 · 김철민 · 민형배 · 이용빈 · 이용선 의원 발의)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이용빈 · 강득구 · 김병욱 · 김병주 · 김성환 · 민병덕 · 민형배 · 박성준 · 백혜련 · 서영교 · 송갑석 · 신영대 · 양정숙 · 양향자 · 윤영덕 · 이병훈 · 이용선 · 이정문 · 이형석 ·

조오섭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6. 허영 · 신정훈 · 서영교 · 이개호 ·
임호선 · 김병주 · 박상혁 · 김철민 · 강훈식 ·
송갑석 · 소병훈 · 최종윤 · 한병도 · 정성호 ·
김윤덕 · 박광온 · 백혜련 · 안규백 · 한기호 ·
김두관 · 홍익표 · 주철현 · 고민정 · 김희재 ·
이철규 · 인재근 · 노용호 · 권성동 · 신현영 ·
박정하 · 김기현 · 정우택 · 김영주 · 유상범 ·
오영환 · 안철수 · 조수진 · 조은희 · 양금희 ·
최강욱 · 정경희 · 이종성 · 전주혜 · 우원식 ·
이양수 · 황보승희 · 서일준 · 신원식 · 윤상현 ·
이원욱 · 하영제 · 이주환 · 장철민 · 남인순 ·
최인호 · 강대식 · 김용관 · 지성호 · 정운천 ·
박대출 · 이용빈 · 박대수 · 윤두현 · 이용 ·
노응래 · 송기현 · 이만희 · 백종현 · 최승재 ·
임종성 · 권인숙 · 이소영 · 조경태 · 우상호 ·
홍정민 · 이형식 · 김한정 · 최기상 · 김남국 ·
김교홍 · 윤호중 · 이종배 · 조명희 · 김영진 ·
소병철 · 송재호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4	-	14	14	1	68
식품의약품 안전처	-	8	-	5	1	13
질병관리청	-	-	-	2	3	3

○청원 회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2023. 2. 3. 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2월 3일 회부됨

○관련청원 회부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2023. 2. 6. 김수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계획서 송부

2023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23. 1. 30. 정부 제출)
1월 30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상 2건 2023. 2. 3.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3일 송부됨